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안내

폐쇄·업무정지 및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 지자체 용(제7판) -

2021. 2. 10.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

- 본 업무안내서 배포 이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다시 배포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자체(시군구) 담당자는 본 업무안내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1	<p>I. 손실보상 개요</p> <p>1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보예산) 4,000억원(국비, '21년 1/4 분기) 	○내용 수정
5	<p>6 추진 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부→ 지자체) 손실보상 업무 안내[4판] 배포 ('20.9.11) 및 지자체 설명회(영상, '20.9.15), 손실보상 업무 안내[5판]('20.11.7), [6판]('20.12.31.) 배포 ○ (복지부→ 청구인) 2차('20.9.25), 3차('20.10.29), 4차('20.11.27), 5차('20.12.24), '21년 1차('21.1.29.) 손실보상금 지급 	○내용 수정
7~12	<p>II.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p> <p>2 '21년도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보상항목 및 산정방식</p> <p>요양기관 (의료기관 · 약국)</p> <p>1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법 제70조제1항제1호, 제2호)</p> <p><input type="checkbox"/> 대상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전담병원)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하여 병상 전체 또는 일부 소개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하는 중환자병상, 준-중환자병상, 중등중환자병상을 갖춘 병원 * 감염병예방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으로부터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p><input type="checkbox"/> 산정방식</p> <p>② (기회비용)</p> <p>① (미사용 병상 손실) (생략)</p>	○내용 수정 및 추가, 삭제 -거점전담병원 개요 수정 -산정방식 수정 -치료의료기관 유형별 보상 기준 표 수정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p>[세부 산식(이하 동일)]</p> <p>◆ 1일당 병상단가 = {(a)급여진료비} + {(b)비급여진료비} ÷ ('19년 연평균 신고 병상수) ÷ (c)연간평균 영업일수 × <u>병상단가 인상률(110%)</u></p> <p>(a)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19년 입원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19년 외래 급여 심사 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입원 관련 외래진료비 비율) × (1 + '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p> <p>* 입원 관련 외래진료비 비율 = (입원+외래 중복환자수 ÷ 외래 환자수) × 100</p> <p>(b) 비급여진료비 = {상기 (a)급여진료비 ÷ '19년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 포함)} - {상기 (a)급여진료비}</p> <p>(c) 연간평균 영업일수 = 365일(입원실 미보유 의원급 299일)</p> <p>* ▲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 병원의 1일당 병상단가가 종별 평균 병상 단가(상급종합병원 537,324원, 종합병원 316,650원, 병원 161,585원) 보다 낮은 경우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조정(거점전담병원은 지정일부터 적용)</p> <p>◆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수 = {∑(정부·지자체 지시·요청에 따라 비운 병상 수)} -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수)}</p> <p>(a) (산출방법) : 정부·지자체 지시에 의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확보한 병상(이하 '확보병상')을 기준으로 산출</p> <p>▶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 병상) : 확보 병상(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개 추가 인정) 및 확보병상을 만들기 위해 소개한 병상(이하 '소개병상')</p> <p>* 병상확보율(확보병상 / (확보병상 + 소개병상))이 50% 미만인 경우, 확보된 치료병상 수에 맞춰 소개병상 인정</p> <p>▶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수(의무확보 병상수는 제외,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 추가 인정)</p> <p>▶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 지정받은 전담치료병상 수에 비례하여 인정</p> <p>-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자원관리본부의 퇴실명령 미이행시, 퇴실명령 익일 다음날부터 추가 보상 제외), 미사용 시 지정병상 1개당 비운 병상 4개 추가 인정</p> <p>- 준-중환자 병상 :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병상 4개 추가 인정</p> <p>(b) 정부·지자체의 지시 또는 요청일부터 종료일(지정해제일 전일)까지 매일 계산하여 합산</p> <p>② (사용 병상 손실) (생략)</p> <p>③ (일반환자 감소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간(지정병원의 경우 운영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p>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p>[세부 산식(이하 동일)]</p> <p>◆ 1일당 진료비 = {(a)급여진료비 + (b)비급여진료비} ÷ (c)연간평균 영업일수</p> <p>(a)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19년 급여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1 + '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1 + '21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p> <p>(b) 비급여진료비 = {상기 (a)급여진료비 ÷ '19년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포함)} - {상기 (a)급여진료비}</p> <p>(c) 연간평균 영업일수 = 365일(입원실 미보유 의원급 299일, '19년 이후 개설은 '19년 영업일수)</p> <p>* 종별 평균 병상단가 조정과 관계없이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비 적용</p> <p>◆ 평균 진료비 감소율 = {(1일당 진료비) × (월별 일수) - ('21년 월별 실제 진료비)} ÷ {(1일당 진료비) × (월별 일수)}</p> <p>* 대구·경북 지역 제외, 종별·월별 적용 * (생략)</p> <p><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추가 보상></p> <p>④ (회복기간 손실)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최대 6개월(180일) 범위 내) 동안의 진료비 손실</p> <p>[세부 산식(이하 동일)]</p> <p>◆ 감염병전담병원의 회복기간 산정기준(日단위로 산정)</p> <table border="1" data-bbox="300 1368 1152 1503"> <tr> <td>병상 소개율*</td> <td>20%미만</td> <td>20%이상~50%미만</td> <td>50%이상~80%미만</td> <td>80%이상</td> </tr> <tr> <td>회복기간</td> <td>운영일수의 50%</td> <td>운영일수의 100%</td> <td>운영일수의 150%</td> <td>운영일수의 200%</td> </tr> </table> <p>* 병상소개율 : (확보병상 + 소개병상) / 신고병상(허가병상)</p> <p>⑤ (의료부대사업 손실) 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매점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 = {(1일당 영업손실액) × (전담병원 운영일수)} - {(21년 운영기간 매출액) × (총 이익률(%))}</p> <p>*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에 해당하는 사업</p> <p>[세부 산식(이하 동일)]</p> <p>◆ 1일당 영업손실액 = ('19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0년 1~12월 평균 물가상승률(0.54%)) ÷ (365일)</p> <p>* 일반영업장도 상동(上同)</p>	병상 소개율*	20%미만	20%이상~50%미만	50%이상~80%미만	80%이상	회복기간	운영일수의 50%	운영일수의 100%	운영일수의 150%	운영일수의 200%	
병상 소개율*	20%미만	20%이상~50%미만	50%이상~80%미만	80%이상								
회복기간	운영일수의 50%	운영일수의 100%	운영일수의 150%	운영일수의 200%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유형별 보상기준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유형</th> <th colspan="3">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th> <th rowspan="2">준-중환자 병상</th> <th rowspan="2">감염병 전담병원 (중등도)</th> <th rowspan="2">거점 전담 병원</th> </tr> <tr> <th>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th> <th>긴급치료 병상</th> <th></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병상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용</td> <td>(병상수 × 병상단가 × 10배) - 실제 진료비</td> <td>(병상수 × 병상단가 × 10배) - 실제 진료비</td> <td>(병상수 × 병상단가 × 10배) - 실제 진료비</td> <td>(병상수 × 병상단가 × 5배) - 실제 진료비</td> <td>(병상수 × 병상단가 × 2배) - 실제 진료비</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병상 유형별 적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미사용</td> <td>병상수 × 병상단가 × 5배</td> <td>병상수 × 병상단가 × 1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개 병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병상수 × 병상단가 × 1배 (최대 확보 병상 수만큼 인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환자 감소 손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료부대 사업 손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회복기간 손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유형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도)	거점 전담 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긴급치료 병상		병상보상	사용	(병상수 × 병상단가 × 10배) - 실제 진료비	(병상수 × 병상단가 × 10배) - 실제 진료비	(병상수 × 병상단가 × 10배) - 실제 진료비	(병상수 × 병상단가 × 5배) - 실제 진료비	(병상수 × 병상단가 × 2배) - 실제 진료비	병상 유형별 적용	미사용	병상수 × 병상단가 × 5배	병상수 × 병상단가 × 1배	소개 병상	-	-	-	-	병상수 × 병상단가 × 1배 (최대 확보 병상 수만큼 인정)	일반환자 감소 손실	○	○	○	○	○	○	의료부대 사업 손실	-	-	-	-	○	○	회복기간 손실	-	-	-	-	○	○				
유형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도)				거점 전담 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긴급치료 병상																																																			
병상보상	사용	(병상수 × 병상단가 × 10배) - 실제 진료비	(병상수 × 병상단가 × 10배) - 실제 진료비	(병상수 × 병상단가 × 10배) - 실제 진료비	(병상수 × 병상단가 × 5배) - 실제 진료비	(병상수 × 병상단가 × 2배) - 실제 진료비	병상 유형별 적용																																														
	미사용	병상수 × 병상단가 × 5배	병상수 × 병상단가 × 1배	병상수 × 병상단가 × 1배	병상수 × 병상단가 × 1배	병상수 × 병상단가 × 1배																																															
	소개 병상	-	-	-	-	병상수 × 병상단가 × 1배 (최대 확보 병상 수만큼 인정)																																															
일반환자 감소 손실	○	○	○	○	○	○																																															
의료부대 사업 손실	-	-	-	-	○	○																																															
회복기간 손실	-	-	-	-	○	○																																															
13~14	<p>2 정부·지사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p> <p><input type="checkbox"/> 산정방식</p> <p>② (기회 비용)</p> <p>1) (의료기관) (생략)</p> <p>[세부 산식(이하 동일)]</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명령이행 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이하인 경우) 영업시간(9:00~21:00) 내의 명령이행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0.5일,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산정 - (1일 초과인 경우) 명령이행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각 상기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시작일과 종료일 시간의 합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총 0.5일로 산정 <p>* 다만,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 편의점 등은 영업시간을 24시간 적용하고, 입원실이 없는 의원 및 약국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보상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법정공휴일 영업 사실을 개별입증 시 보상(다만, 입증 시에는 영업일을 365일로 계산)</p> </div> <p>2) (약국) (생략)</p> <p>[세부 산식(이하 동일)]</p>	○내용 수정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p>◆ 약국의 1일당 영업손실액 = ('19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0년 1~12월 평균 물가상승률(0.54%)) ÷ (299일)</p> <p>* 법정 공휴일 제외</p> <p>**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공휴일 중 근무 사실을 입증할 경우, 영업일을 365일로 계산</p> <p>※ 다만, '20년 영업이익이 유리한 경우에는 '20년 기준으로 이의신청 가능하고 공적 증빙서류 발급가능 시점('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2~3월), 표준재무제표증명(5~6월)) 이후 신청 가능</p> <p>3) (회복기간 손실) (생략)</p> <p>[세부 산식(이하 동일)]</p> <p>◆ 약국의 평균 급여비 감소율</p> <p>= {('19년 급여 심사결정액) ÷ (299일) × (월별 일수) × (1 + '20년 환산지수 증가율) - ('20년 월별 급여 심사결정액)} ÷ {('19년 급여 심사결정액) ÷ (299일) × (월별 일수) × (1 + '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1 + '21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p> <p>* 법정 공휴일 제외</p> <p>**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 공휴일 중 근무 사실을 입증할 경우, 영업일을 365일로 계산</p> <p>*** 대구·경북 지역 제외, 월별 적용</p>	
19	<p>요양기관 이외</p> <p>6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등(법 제70조 제1항제4호)</p> <p><input type="checkbox"/> 산정방식</p> <p>② (기회 비용)</p> <p>[세부 산식(이하 동일)]</p> <p>◆ 1일당 영업손실액 = ('19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0년 1~12월 평균 물가상승률(0.54%)) ÷ (365일)</p> <p>※ 다만, '20년 영업이익이 유리한 경우에는 '20년 기준으로 이의신청 가능하고 공적 증빙서류 발급가능 시점('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2~3월), 표준재무제표증명(5~6월)) 이후 신청 가능</p> <p>◆ 명령이행 기간 (생략)</p>	○내용 수정
20	<p>7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사회복지시설(법 제70조 제1항제4호)</p> <p><input type="checkbox"/> 산정방식</p> <p>② (기회 비용)</p>	○내용 수정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p>[세부 산식(이하 동일)]</p> <p>◆ 미이용자의 급여비 손실 (생략) 【시설 유형별 변동 비용 비율(장기요양기관 패널 경영실태조사 결과 적용)】 (단위:%)</p> <table border="1" data-bbox="331 405 1166 577"> <thead> <tr> <th>시설유형 적용연도 (조사연도)</th> <th>단기보호</th> <th>주야간보호</th> <th>공동생활 가정</th> <th>노인요양 시설</th> </tr> </thead> <tbody> <tr> <td>2020년(2018년)</td> <td>9.9</td> <td>13.6</td> <td>13.7</td> <td>16.1</td> </tr> <tr> <td>2021년(2019년)</td> <td>8.9</td> <td>12.4</td> <td>13.4</td> <td>15.3</td> </tr> </tbody> </table> <p>◆ 상급침실이용료 손실 (생략) 【상급침실이용료(장기요양기관 패널 경영실태조사 결과 적용)】 (단위:원)</p> <table border="1" data-bbox="331 763 1118 943"> <thead> <tr> <th rowspan="2">시설유형 적용연도 (조사연도)</th> <th colspan="2">공동생활가정</th> <th colspan="2">노인요양시설</th> </tr> <tr> <th>1인실</th> <th>2인실</th> <th>1인실</th> <th>2인실</th> </tr> </thead> <tbody> <tr> <td>2020년(2018년)</td> <td>275,000</td> <td>113,333</td> <td>437,500</td> <td>208,813</td> </tr> <tr> <td>2021년(2019년)</td> <td>166,666</td> <td>122,917</td> <td>324,212</td> <td>214,143</td> </tr> </tbody> </table>	시설유형 적용연도 (조사연도)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공동생활 가정	노인요양 시설	2020년(2018년)	9.9	13.6	13.7	16.1	2021년(2019년)	8.9	12.4	13.4	15.3	시설유형 적용연도 (조사연도)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1인실	2인실	1인실	2인실	2020년(2018년)	275,000	113,333	437,500	208,813	2021년(2019년)	166,666	122,917	324,212	214,143	
시설유형 적용연도 (조사연도)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공동생활 가정	노인요양 시설																																
2020년(2018년)	9.9	13.6	13.7	16.1																																
2021년(2019년)	8.9	12.4	13.4	15.3																																
시설유형 적용연도 (조사연도)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1인실	2인실	1인실	2인실																																
2020년(2018년)	275,000	113,333	437,500	208,813																																
2021년(2019년)	166,666	122,917	324,212	214,143																																
26	<p>IV. 손실보상 처리절차</p> <p>2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청구인(청구기관)</p> <p>[대상기관별] 손실보상 청구서류</p> <table border="1" data-bbox="276 1285 1187 1809"> <tr> <td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증빙서류</td> <td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청구인</td> <td> <p>[대상기관 유형별]</p> <p style="text-align: center;"><약국, 일반영업장></p> <p>③ 당해년도 신규사업장</p> <p>- 약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프로그램(POS, EDI, 기간별 조제현황 자료 등) 첨부) · (고정비) 위와 동일 <p>- 일반영업장 (생략)</p> </td> </tr> </table>	증빙서류	청구인	<p>[대상기관 유형별]</p> <p style="text-align: center;"><약국, 일반영업장></p> <p>③ 당해년도 신규사업장</p> <p>- 약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프로그램(POS, EDI, 기간별 조제현황 자료 등) 첨부) · (고정비) 위와 동일 <p>- 일반영업장 (생략)</p>	<p>○내용 추가</p> <p>-약국 증빙자료 안내 보완</p>																															
증빙서류	청구인	<p>[대상기관 유형별]</p> <p style="text-align: center;"><약국, 일반영업장></p> <p>③ 당해년도 신규사업장</p> <p>- 약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프로그램(POS, EDI, 기간별 조제현황 자료 등) 첨부) · (고정비) 위와 동일 <p>- 일반영업장 (생략)</p>																																		
27 ~28	<table border="1" data-bbox="276 1839 1187 2107"> <tr> <td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증빙서류</td> <td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청구인</td> <td> <p>[대상기관 유형별]</p> <p style="text-align: center;"><장소공개 요양기관></p> <p>○(약국)</p> <p>*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p> </td> </tr> </table>	증빙서류	청구인	<p>[대상기관 유형별]</p> <p style="text-align: center;"><장소공개 요양기관></p> <p>○(약국)</p> <p>*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p>	<p>○내용 추가</p> <p>-약국 증빙자료 안내 보완</p>																															
증빙서류	청구인	<p>[대상기관 유형별]</p> <p style="text-align: center;"><장소공개 요양기관></p> <p>○(약국)</p> <p>*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p>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p>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프로그램(POS, EDI, 기간별 조제현황 자료 등) 첨부)</p> <p style="text-align: center;"><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요양기관></p> <p>○(약국)</p> <p>*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 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프로그램(POS, EDI, 기간별 조제현황 자료 등) 첨부)</p> <p style="text-align: center;"><의사·약사 입원·격리 요양기관></p> <p>○ (일부 약사 입원·격리 시)</p> <p>*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 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프로그램(POS, EDI, 기간별 조제현황 자료 등) 첨부)</p>	
37~ 38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10px;">2 청구인 증빙서류</div> <p>[대상기관 유형별]</p> <p><input type="checkbox"/> (전체폐쇄 의료기관 :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p> <p style="margin-left: 20px;">※ (의료부대사업)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에 해당하는 사업</p> <p><input type="checkbox"/> (약국, 일반영업장) 매출액 및 고정비 관련 서류</p> <p style="margin-left: 20px;">※ 다만, '20년 영업이익이 유리한 경우에는 '20년 기준으로 이의신청 가능하고 공적 증빙서류 발급가능 시점('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3월), 표준재무제표증명(5~6월)) 이후 신청 가능</p>	○내용 수정
40	<p><input type="checkbox"/> (장소공개 요양기관)</p> <p>○ (약국)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라 지자체가 장소공개일(정보공개일)부터 7일까지의 일별 매출장</p> <p style="margin-left: 20px;">* 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 (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 프로그램(POS, EDI, 기간별 조제현황 자료 등) 첨부할 것)</p> <p><input type="checkbox"/>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요양기관)</p> <p>○ (약국) 폐쇄·업무정지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의 일별 매출장</p> <p style="margin-left: 20px;">* 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 (조제약+일반의약품</p>	○내용 수정 및 보완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p><u>전체 판매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 프로그램(POS, EDI, <u>기간별 조제현황</u> 자료 등) 첨부할 것</u></p> <p>※ <u>장소공개, 업무정지 등 조치된 약국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이후 산정 결과 매출감소분이 없을 경우(실제매출액이 더 크거나, 영업시간 외 소독조치 등) 보상금이 없을 수 있음을 지자체에서 약국에 사전 안내</u></p>	
41	<p>□ (의사·약사 입원·격리 요양기관)</p> <p>○ (진료비(영업) 손실 근거 : 일부 의사·약사의 입원·격리)</p> <p>- (약국) 일부 약사의 입원·격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일별 매출장</p> <p>* 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 (<u>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 프로그램(POS, EDI, <u>기간별 조제현황</u> 자료 등) 첨부할 것</u>)</p> <p>※ <u>산정 결과 진료비감소율이 70% 미만일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지자체에서 약국에 사전 안내</u></p>	○내용 수정 및 보완
50~ 51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text-align: center;">손실보상 청구건 조사표 작성방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1 공통 작성사항</div> <p>○ (이행기간) (생략)</p> <p>- <u>24시간 운영하는 영업장, 일반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9시) 이외 시간대에 운영하는 영업장은 '24시간 근무' 항목에 체크(✓) 및 기타전달사항 기재</u></p> <p>*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업장임을 확인함' 등 기재</p> <p>* (일반영업시간 외 운영) '실제 운영시간 00시~ 00시' 등 기재</p> <p>- 적용기간은 시작일시와 종료일시 사이의 기간으로 일단위*로 자동 산정(별도 작성 불필요)</p> <p>* 1일 5시간 미만인 경우 0.5일로 산정</p>	○내용 수정
52	<p>□ 대상기관 조치 이행</p> <p>○ (직접 이행) 지자체의 소독명령(조치)에 따라 대상기관이 직접 소독을 이행한 경우 <u>소요비용(세액 제외)을 기재</u></p>	○내용 수정
72~ 73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붙임7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 ※ 지자체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div>	○서식 문구 추가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p>※ 일반영업장의 경우 간이지급절차도 신청 가능함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p>	
75	<p>붙임9 간이·정액 지급절차 안내문(일반영업장)</p> <p>② 간이지급절차 (생략)</p> <p>※ 일반영업장에만 해당(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p>	○서식 수정 및 추가
76	<p>붙임10 간이 지급 절차 동의서(일반영업장)</p> <p>□ 청구인은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 된 일반영업장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정액(100,000원)으로 보상받을 것을 희망합니다.</p> <p>※ 일반영업장에만 해당(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p>	○화면 수정
77	<p>붙임11 손실보상 결정 통지서</p> <p>[결정 내역(이하 동일)]</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1일당 진료비 = {(a)급여진료비} + {(b)비급여진료비} ÷ (c)연간평균 영업일수</p> <p>①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19년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1 + '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1 + '21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p> <p>② 비급여진료비 = {상기 ①급여진료비 ÷ '19년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보인 부담 포함)} - {상기 ①급여진료비}</p> <p>③ 연간평균 영업일수 = 365일(입원실 미보유 의원급 299일, '19년 이후 개설은 '19년 영업일수)</p> <p>▶ 1일당 영업손실액 = ('19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0년 1~12월 평균 물가상승률) ÷ (365일)</p> <p>* 입원실이 없는 의원 및 약국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299일로 함.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공휴일 중 근무 사실을 입증할 경우, 영업일을 365일로 계산</p> <p>※ 다만, '20년 영업이익이 유리한 경우에는 '20년 기준으로 이의신청 가능하고 공적 증빙서류 발급가능 시점('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3월), 표준재무제표증명(5~6월))이후 신청 가능</p> </div>	
112	<p>VI. 약국·일반영업장</p> <p>Q1. 일반영업장의 보상대상 범위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p> <p>□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기관)은 원칙상 대상이 아님.</p>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p>- 다만, <u>고유목적사업 외</u> 별도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에서 손실을 입증 시에는 보상 대상</p>	
115	<p>Q12. '24시간 운영' 영업장은 별도 입증이 필요한지?</p> <p><input type="checkbox"/> 24시간 운영하는 영업장은 <u>영업시간 외 영업사실 입증(매출 전표 등)</u> 불요</p> <p>- (24시간 영업장) 편의점, 숙박업소, PC방, 찜질방, 사우나, (영업장 내·외부, 간판 등에) 24시간 영업소로 표시된 곳, 인터넷 포털에 24시간 영업시간이 표시된 곳</p> <p>※ 지자체는 조사표 작성 시, 해당 영업장이 '24시간 영업장'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제출할 것(<u>기타전달사항에 '24시간 운영 업장임을 확인함'</u> 등으로 기재)</p> <p><input type="checkbox"/> 24시간 영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장이 <u>일반영업시간(오전9시~오후9시)</u> 이외 시간대에 영업한 경우에는, 별도 입증(매출전표 등) 시 보상</p> <p>- <u>기타전달사항에 '실제 운영시간 00시~00시'</u> 등으로 기재</p>	
116	<p>Q14. 간이지급절차로 손실보상하는 경우 영업시간 내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인지 확인해야 하는지?</p> <p><input type="checkbox"/> 영업시간 외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한다 볼 수 없으므로, <u>영업시간내 조치에 한해서만 간이지급 신청 가능</u></p> <p>※ 일반영업시간(오전9시~오후9시)</p>	
124	<p>Ⅷ.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협력기관</p> <p>Q7. 시설개조 및 장비 구입비 등을 사업예산으로 既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p> <p><input type="checkbox"/> 원칙적으로 사업예산으로 既 지원받은 경우에는 <u>손실보상 대상이 아님</u></p> <p>- 사업부서(<u>중수본 환자병상지원팀 등</u>)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하지 못한 경우 보상 가능</p>	

목 차[1]

I. 손실보상 개요	1
II.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	6
III. 손실보상 대상기관 및 청구(접수)기관	22
IV. 손실보상 처리절차	24
V. 지자체 조치사항	65

목 차[2]

[붙임]

1. 손실보상청구서[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66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67
3. 손실보상 청구 위임장	68
4.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확인서(요양기관)	69
5. 손실보상금 분할지급 신청서(병원급 의료기관)	70
6.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미이용자 조사표(사회복지시설)	71
7.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	72
8. 손실보상금 미지급 안내문	74
9. 간이·정액 지급절차 안내문(일반영업장)	75
10. 간이 지급 절차 동의서(일반영업장)	76
11. 손실보상 결정통지서 등	77
12. 이의신청서	81
13. 코로나19 손실보상 모니터링 매뉴얼(시·도)	82
14. 코로나19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 매뉴얼(시·군·구)	84
15. 영업시간 외 보건소에서 직접 소득한 경우 손실보상 업무 처리	96
16. 손실보상금 분할지급	97
17. 지자체용 Q&A	98
18.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관련 법령 : 감염병예방법·시행령	125
19. 손실보상금 지급 유사사례 보상절차	129

I. 손실보상 개요

1 개요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
- (확보예산) 4,000억원(국비, '21년 1/4 분기)
- (보상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
 -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 감염병환자 진료·격리, 의료기관 등 폐쇄·업무정지, 오염장소 소독 등
- (보상범위) 시설·장비·인력 등의 투입비용, 해당 자원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 등 고려하여 산정
 - ※ 손실을 발생·확대 시킨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감액 또는 미지급(법 제70조제3항)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구분	손실보상 대상 (법 제70조제1항)	손실보상 범위 (시행령 제28조제1항)
의료 기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설치·운영 비용 시설·장비·인력 손실 비용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등 진료	시설·장비·인력 소요 및 손실 비용
	의료기관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	시설·장비·인력 손실 비용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의 공개	상기에 준하는 손실
격리 시설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설치·운영 비용 시설·장비·인력 손실 비용
약국 등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의 공개	의료기관 손실에 준함
기타	방역 조치에 따른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오염물건 폐기	시설·장비·인력 손실 비용 소독 및 필요 조치 비용 음식물, 물건의 평가액 등
	환자 발생 및 오염장소 소독 및 필요 조치 등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음식물, 물건 폐기, 공중위생시설/장소 소독, 어로 사용 제한 등	

2 기본 원칙

- (국가 조치의 이행) 정부·지자체 지시·요청의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합리적 보상
 - ※ 자발적 행위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 병상확보, 폐쇄·업무정지, 소독 등 조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자료(공문서, 중대본 공식통계 및 지자체 보고자료 등)를 기준으로 보상 인정
 - 단, 정부·지자체의 조치 명령 이전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응급실 폐쇄 등 자발적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소관 지자체가 해당 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의 조치명령 이행기간으로 편입 가능
- (환자치료 기여도 고려)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등)에게 합리적 보상으로 향후 정부의 감염병 대응조치에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
- (중복보상의 방지) 既 지급된 보상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누수를 방지하되, 실제 발생한(또는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
 -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한 손실보상금

3 재원 부담

-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 및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지자체 조치는 국고로 손실보상 지원하되,
 - 정부 지침과 별도의 지자체 자체 조치는 지자체 부담

4

손실보상 주체 및 역할

- (법률상 주체) 감염병예방법* 상 손실보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시군구청장'으로 규정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주체별 역할)

- (복지부) 재원(국비) 확보,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보상항목 및 산정기준 마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손실보상금 지급 등 손실보상 업무 총괄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 법률·손해사정·분쟁조정·건강보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다만, 행정 효율성, 심사 전문성, 보상대상 유형·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심사 수행

* 요양기관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 운영, 약국·일반영업장 등은 손해사정사회 용역

- (지자체) 관할 지역의 손실보상 대상 확인 및 청구 지원

- 코로나19 대응조치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므로, 손실보상 청구 안내, 손실보상 대상기관의 청구서류 접수 및 1차 검토 등은 지자체에서 수행

<손실보상금 지자체(시군구) 청구·접수 유사사례 >

- ▶ (대상사업) 가축전염병 손실보상금·가축전염병 생계안정비용(가축전염병예방법), 곤충 손실보상금(곤충산업법), 식물 손실보상금(식물병역법), 기립불능소 보상금(축산물위생관리법) 등
- ▶ (청구·접수절차) 손실을 입은 자가 관할 시군구에 보상금 청구(시군구에서 접수) → 시군구별 평가반이 손실여부 및 손실범위 확인 후 예상 보상금액 산정하여 검토확인서 작성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목적)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원칙·대상·기준 등)의 심의·의결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2(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위원구성) 공동위원장(2인: 보건복지부 차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4인
 - * 법률·손해사정·분쟁조정·건강보험 등 전문가 8인, 의협·병협·약사회·간협 추천 4인, 정부 2인(간사포함)
- (임기) 3년
-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개최 및 심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손실보상전문위원회

- (목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한 전문가 사전 검토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3제7항
- (위원구성) 심의위원회 위원 중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9인
 - * 법률·손해사정·분쟁조정·건강보험 등 전문가 5인, 의협·병협·약사회 추천 3인, 정부 1인
- (임기) 3년
- (운영) 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소집 요청 등의 경우 회의개최 및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6 추진 경과

- (복지부 → 지자체) 손실보상 업무 안내[1판] 배포 및 청구지원 준비 요청('20.7.15), 지자체 설명회(영상, '20.7.20)
- (지자체) 손실보상 대상기관 선정* 및 사전안내, 손실보상청구 접수 및 검토('20.7.15~)
 - * '20.6월 이전 손실발생 기관부터 우선 선정
- (복지부 → 지자체) 손실보상 관련 업무화면(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사용 매뉴얼 포함한** 손실보상 업무 안내[2판] 배포('20.7.24)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내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업무화면 개발(7월~)
 - ** 손실보상 관련 업무화면 오픈 시 원활한 사용을 위해 사전 안내
- (심평원) 손실보상 관련 업무화면 오픈('20.7.27)
- (지자체) 손실보상청구 본격 접수*(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상시 등록 '20.7.27~)
 - * 사실확인 등 검토한 내용을 조사표 작성 및 증빙자료 등록 후 복지부에 제출(공문 발송)
- (심평원, 한국손해사정사회) 손실보상 심사('20.7.27~)
 - * 손실보상 심사위탁 계약 체결(복지부-심평원, 7.22, 심평원-한국손해사정사회, 7.30)
- (복지부 → 지자체) 손실보상 업무 안내[3판] 배포('20.7.31)
- (복지부) 1차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손실보상전문위원회 논의('20.8.25),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0.8.28)
- (복지부 → 지자체 → 청구인) 1차 손실보상금 결정 내역 통보,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결정통지서 개별 안내('20.8.31)
- (복지부 → 청구인) 1차 손실보상금 지급('20.8.31)
- (복지부 → 지자체) 손실보상 업무 안내[4판] 배포('20.9.11) 및 지자체 설명회(영상, '20.9.15), 손실보상 업무 안내[5판]('20.11.7), [6판]('20.12.31.) 배포
- (복지부 → 청구인) 2차('20.9.25), 3차('20.10.29), 4차('20.11.27), 5차('20.12.24), '21년 1차('21.1.29.) 손실보상금 지급
- ※ 손실보상청구 접수·심사를 상시화하고 매월 손실보상전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정례화

II.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

1 손실보상 대상유형 분류

분류	손실보상 대상유형	법적 근거
요양 기관	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법 제70조제1항제1호, 2호
	②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	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
	③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법 제70조제1항제5호
	④ 생활치료센터 협력 의료기관	법 제70조제1항제1호
	⑤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법 제70조제1항제1호
요양 기관 이외	⑥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등	법 제70조제1항제4호
	⑦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사회복지시설	법 제70조제1항제4호
	⑧ 접촉자 격리시설	법 제70조제1항제1의2호
	⑨ 오염된 물건·음식물의 폐기, 의료인·의료업자 등의 동원	법 제70조제1항제4호

2

'21년도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보상항목 및 산정방식

- ◇ 손실보상은 정부·지자체 조치이행에 직접 소요된 비용(직접 비용)과 해당 시설·장비·인력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비용(기회 비용)을 보상
⇒ **직접 비용 + 기회 비용**

요양기관 (의료기관 · 약국)

1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법 제70조제1항제1호, 제2호)

□ 대상기관

-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관리를 전담하는 병원
 - * 감염병예방법 제36조 또는 제37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중 국가·지자체로부터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음압·격리병실을 확보토록 지시·요청받은 의료기관
- (거점전담병원)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하여 병상 전체 또는 일부 소개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하는 중환자병상, 준-중환자병상, 중등중환자병상을 갖춘 병원
 - * 감염병예방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으로부터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감염병관리기관
 - * 감염병예방법 제36조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규정”(질병관리청 예규 제7호)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 (중중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코로나19 확진 중환자만을 치료하기 위해 장비·시설 등의 조치가 완료되고 진료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여 중수본으로부터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기타 치료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관리를 요청받은 의료기관*

* 정신질환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 협조를 요청받은 의료기관 포함

□ 산정방식

- ① (직접 비용) 정부·지자체 조치이행을 위해 시설개조·철거, 장비구입 등에 소요된 직접 비용(기 지원된 정부·지자체 지원금 차감)

【직접비용 항목별 보상기준】

직접비용 보상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배제) 별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항목은 보상대상 아님 ▲(인과관계) 조치명령과 비용 발생 간의 인과관계 필요
보 상 항 목	① 시설철거비	<p>철거 명령을 실시한 정부·지자체의 적정성 의견수렴 후 보상</p> <p>* 시설·장비비의 경우 별도 사업예산으로 지원하므로 보상대상 아님. 코로나19 환자에 치료에 필요한 장비이나 확보물량 부족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 물자관리팀 승인 후 대여비용 보상 가능</p>
	② 폐기물처리비	<p>코로나19 환자와 관련되는 폐기물처리비 보상</p> <p>* 용역비, 전용용기 구입비, 전자태그 비용 등</p>
	③ 환자전원비	<p>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자체의 병상 소개명령 등으로 환자를 전원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p>

※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소득비, 인건비 및 공공요금, 소모품 등의 기타운영비는 별도 예산,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지원하고 있어 보상대상 아님

② (기회비용) 아래 ① + ② + ③에 해당하는 손실

① (미사용 병상 손실) 정부·지자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 (1일당 병상단가) \times (\sum \text{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수})$$

[세부 산식 (이하 동일)]

◆ 1일당 병상단가 = {(a)급여진료비} + {(b)비급여진료비} ÷ ('19년 연평균 신고 병상수) ÷ (c)연간평균 영업일수) × 병상단가 인상률(110%)

①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19년 입원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19년 외래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입원 관련 외래진료비 비율)} × (1 + '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입원 관련 외래진료비 비율 = (입원+외래 중복환자수 ÷ 외래환자수) × 100

② 비급여진료비 = {상기 ①급여진료비 ÷ '19년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 포함)} - {상기 ①급여진료비}

③ 연간평균 영업일수 = 365일(입원실 미보유 의원급 299일)

*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의 1일당 병상단가가 종별 평균 병상 단가(상급종합병원 537,324원, 종합병원 316,650원, 병원 161,585원) 보다 낮은 경우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조정(거점전담병원은 지정일부터 적용)

◆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수 = {∑(정부·지자체 지시·요청에 따라 비운 병상 수)} -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수)}

① (산출방법) : 정부·지자체 지시에 의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확보한 병상 (이하 '확보병상')을 기준으로 산출

- ▶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 병상) : 확보 병상(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개 추가 인정) 및 확보병상을 만들기 위해 소개한 병상(이하 '소개병상')
- * 병상확보율(확보병상 / (확보병상 + 소개병상))이 50% 미만인 경우, 확보된 치료병상 수에 맞춰 소개병상 인정
-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수(의무확보 병상수는 제외,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은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 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 추가 인정)
- ▶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 지정받은 전담치료병상 수에 비례하여 인정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재원관리본부의 퇴실명령 미이행시, 퇴실명령 익일 다음날부터 추가 보상 제외), 미사용 시 지정병상 1개당 비운 병상 4개 추가 인정
 - 준중환자 병상 :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병상 4개 추가 인정

② 정부·지자체의 지시 또는 요청일부터 종료일(지정해제일 전일)까지 매일 계산하여 합산

② (사용 병상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 {(1일당 병상단가) ×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수)} -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발생한 진료비*}

* 입원+외래(입원 관련),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약제·치료재료 제외

③ (일반환자 감소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간(지정병원의 경우 운영 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

= {(1일당 진료비) × (치료기간) × (1 -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 {(치료기간의 실제 진료비)*} + (상기 ① + ② 보상액)

* 입원+외래,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약제·치료재료 제외

[세부 산식(이하 동일)]

◆ 1일당 진료비 = {(a)급여진료비} + {(b)비급여진료비} ÷ (c)연간평균 영업일수

(a)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19년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1 + '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1 + '21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b) 비급여진료비 = {상기 (a)급여진료비 ÷ '19년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보인부담 포함)} - {상기 (a)급여진료비}

(c) 연간평균 영업일수 = 365일(입원실 미보유 의원급 299일, '19년 이후 개설은 '19년 영업일수)

* 종별 평균 병상단가 조정과 관계없이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비 적용

◆ 평균 진료비 감소율

= {(1일당 진료비) × (월별 일수) - ('21년 월별 실제 진료비)} ÷ {(1일당 진료비) × (월별 일수)}

* 대구·경북 지역 제외, 종별·월별 적용

* 종합병원급 이상은 코로나19와 무관한(환자치료·폐쇄·업무정지 등 조치기관 제외)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적용(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종합병원의 치료-미치료 기관 감소율 차이와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미치료 의료기관의 감소율 산출)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추가 보상* : 아래 ④ + ⑤에 해당하는 손실>

※ 환자치료 등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 보상

④ (회복기간 손실)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최대 6개월(180일) 범위 내) 동안의 진료비 손실

$$= \{(1일당 진료비) \times (회복기간) \times (1 -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 (회복기간의 실제 진료비^*)$$

* 입원+외래,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약제·치료재료 제외

[세부 산식 (이하 동일)]

◆ 감염병전담병원의 회복기간 산정기준(日단위로 산정)

병상 소개율*	20%미만	20%이상~50%미만	50%이상~80%미만	80%이상
회복기간	운영일수의 50%	운영일수의 100%	운영일수의 150%	운영일수의 200%

* 병상소개율 : (확보병상 + 소개병상) / 신고병상(허가병상)

⑤ (의료부대사업 손실) 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매점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

$$= \{(1일당 영업손실액) \times (전담병원 운영일수)\} - \{('21년 운영기간 매출액) \times (총 이익률(\%))\}$$

*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세부 산식 (이하 동일)]

◆ 1일당 영업손실액 = ('19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0년 1~12월 평균 물가상승률(0.54%)) ÷ (365일)

* 일반영업장도 상동 (上同)

◆ 총 이익률(%) = ('19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19년 매출액) × 100

<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유형별 보상기준 >

유형	증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증환자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도)	거점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병상보상	확보병상	사용	(병상수 × 병상단가 × 10배) - 실제 진료비	(병상수 × 병상단가 × 10배) - 실제 진료비	(병상수 × 병상단가 × 10배) - 실제 진료비	(병상수 × 병상단가 × 5배) - 실제 진료비	(병상수 × 병상단가 × 2배) - 실제 진료비	병상 유형별 적용
		* 실제 진료비 수입은 실제 사용병상 1개에서만 차감						
	미사용	병상수 × 병상단가 × 5배	병상수 × 병상단가 × 1배	병상수 × 병상단가 × 1배	병상수 × 병상단가 × 1배	병상수 × 병상단가 × 1배	병상수 × 병상단가 × 1배	
	소개 병상	-	-	-	-	-	병상수 × 병상단가 × 1배 (최대 확보병상 수만큼 인정)	
	일반환자 감소 손실	○	○	○	○	○	○	○
	의료부대 사업 손실	-	-	-	-	○	○	○
	회복기간 손실	-	-	-	-	○	○	○

2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

□ 대상기관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로부터 폐쇄,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및 약국

□ 산정방식

① (직접 비용) 정부·지자체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 국가가 보상하는 직접비용은 소독비용으로 한정하며,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소독조치 이외 다른 조치명령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자체가 보상 책임

② (기회 비용) 폐쇄·업무정지기간과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기관에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영업)비 손실 보상

1) (의료기관) = (1일당 진료비) × (명령이행기간)

- ※ 전체폐쇄 또는 업무정지 의료기관의 의료부대시설(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 손실도 보상
- ※ 코호트격리, 일부 폐쇄 등으로 해당 기간 실제 발생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차감 후 보상

[세부 산식(이하 동일)]

◆ 명령이행 기간

- (1일 이하인 경우) 영업시간(9:00~21:00) 내의 명령이행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0.5일,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산정
- (1일 초과인 경우) 명령이행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각 상기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시작일과 종료일 시간의 합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총 0.5일로 산정
- * 다만,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 편의점 등은 영업시간을 24시간 적용하고, 입원실이 없는 의원 및 약국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보상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법정공휴일 영업 사실을 개별입증 시 보상(다만, 입증 시에는 영업일을 365일로 계산)

2) (약국) = (1일당 영업손실액) × (명령이행기간)

[세부 산식 (이하 동일)]

◆ 약국의 1일당 영업손실액 = ('19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0년 1~12월 평균 물가상승률(0.54%)) ÷ (299일*)

* 법정 공휴일 제외

**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공휴일 중 근무 사실을 입증할 경우, 영업일을 365일로 계산

※ 다만, '20년 영업이익이 유리한 경우에는 '20년 기준으로 이의신청 가능하고 공적 증빙서류 발급가능 시점('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3월), 표준재무제표증명(5~6월)) 이후 신청 가능

3) (회복기간 손실) 8일 이상 전체 폐쇄·업무정지된 요양기관에 한하여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영업)비 감소분 보상

• (산정방식)

- (의료기관) = {(1일당 진료비) × (회복기간) × (1 -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 (회복기간의 실제 진료비*)

* 입원+외래,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의약품·치료재료 미포함

- (약국) = {(1일당 영업손실액) × (회복기간) × (1 - 약국의 평균 급여비 감소율)} - {(회복기간의 실제 매출액) × (총 이익률(%))}

[세부 산식 (이하 동일)]

◆ 회복기간 = (폐쇄·업무정지기간) - (5일) ※ 단, 최소 3일 ~ 최대 7일

* 폐쇄·업무정지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산입하며, 입원실이 없는 의원 및 약국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보상 제외

ex) 폐쇄·업무정지 기간이 9일(1일~9일)인 경우, 회복기간은 4일(10일~13일)

◆ 약국의 평균 급여비 감소율

= {'19년 급여 심사결정액} ÷ (299일) × (월별 일수) × (1 + '20년 환산지수 증가율) - {'20년 월별 급여 심사결정액} ÷ {'19년 급여 심사결정액} ÷ (299일) × (월별 일수) × (1 + '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1 + '21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법정 공휴일 제외

**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 공휴일 중 근무 사실을 입증할 경우, 영업일을 365일로 계산

*** 대구·경북 지역 제외, 월별 적용

□ 대상기관

-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사실을 공개하여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및 약국

□ 산정방식

① (직접 비용) 정부·지자체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국가가 보상하는 직접비용은 소독비용으로 한정하며,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소독조치 이외 다른 조치명령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자체가 보상 책임

② (기회 비용) 장소공개 여부, 의사·약사의 격리 여부 및 운영형태별 구분

1) 확진자 발생·경유하였으나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자체의 소독명령 이행에 따른 진료(영업)비 손실

$$= \{1\text{일당 진료비(영업손실액)}\} \times \{\text{명령이행기간}\}$$

2) 확진자 발생·경유로 장소가 공개된 경우(㉠+㉡)

㉠ 정부·지자체의 소독명령 이행에 따른 진료(영업)비 손실

※ 환자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확진되어 장소가 공개된 경우 제외

㉡ 장소공개로 인하여 일정기간 환자감소로 발생한 손실

$$\text{- (의료기관)} = \{(1\text{일당 진료비}) \times (7\text{일(정보공개일 당일 포함)}) \times (1 - \text{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 (7\text{일 동안의 실제 진료비}^*)$$

* 입원+외래,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약제·치료재료 제외

$$\text{- (약국)} = \{(1\text{일당 영업손실액}) \times (7\text{일(정보공개일 당일 포함)}) \times (1 - \text{약국의 평균 급여비 감소율})\} - \{(7\text{일 동안의 실제 매출액}) \times (\text{총 이익률}(\%))\}$$

- 3) 확진자 발생·경유로 전체 의사·약사가 입원·격리조치, 휴업한 경우(㉠+㉡)
- ※ 의사·약사의 입원·격리 조치에 따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환자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입원·격리 조치된 경우 제외)
- ㉠ 휴업기간 동안의 진료(영업)비 손실
= {(1일당 진료비(영업손실액)) × (휴업일수)}
- ㉡ 장소가 공개된 경우, 장소공개로 인하여 일정기간(정보공개후 7일) 환자감소로 발생한 손실 (상기 2)의 ㉠와 동일)
- 4) 확진자 발생·경유로 전체 의사·약사가 입원·격리조치, 대체인력 고용한 경우(㉢+㉣)
- ※ 의사·약사의 입원·격리 조치에 따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환자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입원·격리 조치된 경우 제외)
- ㉢ 대체 의사 또는 약사의 인건비
= {대체 의사 또는 약사 인건비}
- ㉣ 장소가 공개된 경우, 장소공개로 인하여 일정기간(정보공개후 7일) 환자감소로 발생한 손실 (상기 2)의 ㉠와 동일)
- 5) 확진자 발생·경유로 일부 의사·약사가 입원·격리 조치된 경우
- (대 상) 의사·약사 격리비율이 50% 이상이면서 격리로 인한 손실 보상 대상기간 동안의 진료(영업)비 감소율이 70% 이상인 경우
 - (산정방식) 격리 조치로 인한 진료(영업)비 손실을 보상
 - (휴업한 경우) 진료(영업)비 손실 중 격리된 의사·약사 비율만큼 보상
= (1일당 진료비(영업손실액)) × (휴업일수) × (격리된 의사·약사의 비율)
 - (휴업하지 않는 경우) 실제 진료(영업)비 수입을 차감한 진료(영업)비 손실을 보상 (평균 진료비 감소율은 차감)
 - (의료기관) = (1일당 진료비) × (격리 중 영업기간) × (1 -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 (격리 중 영업기간 동안의 실제 진료비)
 - (약국) = (1일당 영업손실액) × (격리 중 영업기간) × (1 - 약국의 평균 급여비 감소율) - (격리 중 영업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액 × 총이익률(%))

4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법 제70조제1항제1호)

□ 대상기관

-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격리·치료를 위하여 설치·지정한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을 파견한 의료기관

* 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양소

□ 산정방식

- ① (직접 비용)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보호구·검사물품 등 소모품 구입, 시설임차 및 운영비 등은 예산 지원 중

- ② (기회 비용) 의료인파견 등 진료지원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비 손실

* ①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우 ③일반환자 감소 손실에 포함하여 보상

** ⑤의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은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한 손실과 생활치료센터 진료지원으로 인한 손실을 각각 더하여 100% 범위 내에서 보상

$$= \{(1\text{일당 진료비}) \times (\text{파견기간}) \times (\text{파견의사수} \div \text{전체의사수}) \times (1 - \text{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 (\text{생활치료센터 진료비 수입}^*)$$

* 입원+외래,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약제·치료재료 제외

5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법 제70조제1항제1호)

□ 대상기관

-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격리된 진료공간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병원

* 선별진료소 현황 및 운영시간 등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등록된 의료기관

□ 산정방식

- ① (직접 비용) 선별진료소의 음압텐트 등 장비·설비 구입/대여 비용, 기타 소모품 구입 등에 대하여 예산 지원 중

- ② (기회 비용)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 ①외래 기대 진료비 손실분의 전체(100%) + ②입원 기대 진료비 손실분의 50%*

* △선별진료소 운영시, 외래환자 감소에 따른 입원환자 감소 영향은 일부일 수 있는 점, △환자치료기관 - 미치료 의료기관간 차등적 보상 필요 등 종합적으로 고려

** ①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우 ③일반환자 감소 손실에 포함하여 보상

$$= \{(\text{전체 진료비 감소액}) \times (\text{입원 진료비 감소액 비중}) \times 50\% \} + \{(\text{전체 진료비 감소액}) \times (\text{외래 진료비 감소액 비중}) \times 100\%$$

[세부 산식 (이하 동일)]

◆ 전체 진료비 감소액

$$= \{(\text{1일당 진료비}) \times (\text{선별진료소 운영기간}) \times (1 - \text{평균 진료비 감소율})\} - (\text{선별진료소 운영기간의 실제 진료비(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입원 진료비 감소분 및 외래 진료비 감소분도 동일 산식 적용

◆ 입원(또는 외래) 진료비 감소액 비중(100%를 넘는 경우 100%로 산정)

$$= \text{입원(또는 외래) 진료비 감소액} \div \text{전체 진료비 감소액}$$

요양기관 이외

6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등(법 제70조제1항제4호)

□ 대상기관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여 정부·지자체로부터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일반영업장 등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제2호로 인한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산정방식

① (직접 비용) 정부·지자체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국가가 보상하는 직접비용은 소독비용으로 한정하며,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소독조치 이외 다른 조치명령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자체가 보상 책임

② (기회 비용) 폐쇄·출입금지·소독(소독후 휴업) 등에 따른 휴업 손실

$$= \{1\text{일당 영업손실액}\} \times \{\text{명령이행기간}\}$$

[세부 산식(이하 동일)]

◆ 1일당 영업손실액 = ('19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0년 1~12월 평균 물가상승률(0.54%)) ÷ (365일)

※ 다만, '20년 영업이익이 유리한 경우에는 '20년 기준으로 이의신청 가능하고 공적 증빙서류 발급가능 시점('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3월), 표준재무제표증명(5~6월)) 이후 신청 가능

◆ 명령이행 기간

- (1일 이하인 경우) 영업시간(9:00~21:00) 내의 명령이행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0.5일,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산정

- (1일 초과인 경우) 명령이행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각 상기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시작일과 종료일 시간의 합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총 0.5일로 산정

* 다만,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 편의점 등은 영업시간을 24시간 적용하고 이 외는 개별 입증시 보상

※ 청구인은 상기 산식의 일반지급절차와 간이·정액 지급절차* 중 선택 가능

* (간이·정액지급절차)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불요, 폐쇄·업무정지·소독 기간에 관계없이 정액(100,000원) 지급

7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사회복지시설(법 제70조제1항제4호)

□ 대상기관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여 정부·지자체로부터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

□ 산정방식

① (직접 비용) 정부·지자체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국가가 보상하는 직접비용은 소독비용으로 한정하며,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소독조치 이외 다른 조치명령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자체가 보상 책임

② (기회 비용) 지자체 조치(폐쇄 등)로 인한 서비스 미이용자의 급여비 및 상급침실이용료(비급여) 손실

※ 어린이집,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 (A)미이용자의 급여비 손실) + (B)상급침실이용료 손실)

[세부 산식(이하 동일)]

◆ 미이용자의 급여비 손실

= {(미이용자(명)) × (1일당 급여비) × (명령이행기간) × (1 - 시설유형별 변동비용비율)} - {미이용자의 급여비 등 정부지급액}

* 기존 이용자의 시설 미이용에 따른 변동비용의 감소 반영

** 외박비용, 미이용 급여비용 등 미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비 등

【시설 유형별 변동 비용 비율(장기요양기관 패널 경영실태조사 결과 적용)】 (단위:%)

시설유형 적용연도 (조사연도)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2020년(2018년)	9.9	13.6	13.7	16.1
2021년(2019년)	8.9	12.4	13.4	15.3

◆ 상급침실이용료 손실

= (1일당 평균 상급침실이용료*) × (명령이행기간)

* '18년 노인장기요양시설 경영실태 패널조사의 평균 상급침실이용료 적용

【상급침실이용료(장기요양기관 패널 경영실태조사 결과 적용)】 (단위:원)

시설유형 적용연도 (조사연도)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1인실	2인실	1인실	2인실
2020년(2018년)	275,000	113,333	437,500	208,813
2021년(2019년)	166,666	122,917	324,212	214,143

8

접촉자 격리시설(법 제70조제1항제1의2호)

□ 대상기관

- 감염병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어 의료기관 격리는 불필요하나 자가격리가 어렵거나 시설 격리를 희망하는 자를 격리하는 시설

□ 산정방식

① (직접 비용) 격리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된 직접 비용

② (기회 비용) 기관을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비용은 예산 지원 중으로 손실보상 대상 아님

* (지원내용) 소모품비(식사, 생필품, 마스크 등), 인건비, 용역비(소독, 폐기물처리 등)

9

의료인 등의 동원, 오염된 물건·음식물 폐기(법 제70조제1항제4호)

① (인건비) 동원기간 동안의 인건비

= {1일당 인력 인건비} × {동원된 일수}

*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예산 지원 중

② (폐기물건 등 평가액) 폐기, 소각 등 처분된 음식물, 물건의 평가액

* 폐기비용은 보상대상 아님(규정 없음)

Ⅲ. 손실보상 대상기관 및 청구(접수)기관

1 손실보상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할 지역 내 병상확보, 폐쇄·업무정지, 소독 등 조치하여 손실이 발생한 기관
(‘붙임18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관련 법령’ 참조)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기관>

- ① (자발적 조치기관) 정부·지자체의 강제적 조치가 아닌 자발적으로 소독, 휴업 등 자체 조치한 기관
- ② (예방적 조치기관) 정부·지자체가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11호, 제14호에 따라 집합제한 등 예방적으로 조치한 기관

< 손실보상 대상기관 유형 분류 >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
 - (환자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기타 치료의료기관
 - (방역 협력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한 기관 등
 -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및 소독 조치하거나,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 (일반영업장)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및 소독 조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상점(슈퍼마켓, 편의점, 정육점, 서점, 문구점 등) 등
 - (사회복지시설)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및 소독 조치한 노인요양시설 등

2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청구(접수)기관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청구(접수)기관>

구 분	손실보상 대상유형 (p6 참고)	청구(접수)기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① ④ ⑤	보건복지부 (심평원)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한 기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② ③ ⑥ ⑦	지자체 (시군구)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

→ 보건복지부(심평원)에 청구

- 환자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설치·운영에 따른 의료장비·소모품, 의료인력 투입 등 확인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전년도 건강보험 급여진료비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므로,
- 요양기관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접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하여 1차 검토

○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한 기관 등 → 지자체(시군구)에 청구

- 지자체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및 자가격리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가능하므로,
- 지자체가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하여 1차 검토
 - * 조치사유 및 내용, 이행여부, 장소공개 여부 등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이더라도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은 지자체(시군구)에 청구

IV. 손실보상 처리절차



※ 결정·지급된 손실보상금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1 대상기관 선정 및 사전 안내 : 지자체(시군구)

- ◇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병상확보, 폐쇄·업무정지, 소독 등 조치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므로, 지자체가 손실보상 대상여부 및 손실규모 확인 가능
- ◇ 따라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기관의 무분별한 청구 및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자체가 손실보상 대상기관을 우선 선정 한 후 선정된 대상기관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

○ 지자체(시군구)는 그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치한 기관 중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서면, 문자, 이메일, 팩스 등)
(붙임6 '손실보상 청구안내문' 참조)

- 사전 안내 시 대상기관별 손실보상 청구서류를 안내하여, 대상기관이 사전에 서류 등을 준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

※ '영업시간 외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한 기관'은 손실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사전 안내하되, 손실보상 청구는 불필요(붙임15 영업시간 외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한 경우 손실보상 업무처리' 참조)

<손실보상금 청구 사전안내 유사사례 >

- ▶ (대상사업) 가축전염병 생계안정비용(가축전염병예방법)
- ▶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지자체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명령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
- ▶ (사전안내절차) 시군구가 생계안정비용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대상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 지원대상은 시군구에 지원 신청서 제출

2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청구인(청구기관)

- 대상기관의 청구인은 손실보상청구서 및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시군구)에 제출

[대상기관별] 손실보상 청구서류

구분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신청서 (공통)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실보상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동사업자) 손실보상 청구 위임장 					
증빙서류	청구인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 등 조치명령 근거(공문, 명령서, 사후확인공문*) *조치명령 당시의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조치명령 했음(조치명령 일자 및 내용, 이행기간 등 기재)'을 사후에 확인하는 내부결재 공문 ○소독 등 조치이행 근거(소독증명서, 소독비용 영수증 등) *보건소가 직접 소독한 경우 서류 제출 불필요 ○손실보상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p>[대상기관 유형별]</p> <p><의료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확인서 ○진료비 손실 근거 : 별도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활용 	<p><약국, 일반영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확인서 *일반영업장은 제출 불필요 ○사업자등록증 *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사업자등록증 제출 불필요) ○영업 손실 근거 : 매출액 및 고정비 관련 서류 *영업시간 외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한 경우 이하 서류 제출 불필요 ①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및 고정비)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②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p><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미이용자 조사표 ○급여비 손실 근거 : 별도 제출 불필요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등 활용 ○미이용자 근거 (공문, 입원·격리 통지서 등) ○미이용자 상급침실 		

구분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사업자)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19년 소득금액증명 ·(면세사업자) 20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19년 소득금액증명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 (고정비) 고정비(급여,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에 대한 특이소요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아래 표 참조)를 제출하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유사업종 표준 고정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고정비(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 과공과, 감가상각비)는 일괄 유사업종 표준 고정비 적용 <p>③ 당해년도 신규사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 프로그램(POS, EDI, 기간별 조제현황 자료 등) 첨부) · (고정비) 위와 동일 - 일반영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월별 매출장(개업월부터 폐쇄·업무정지 종료월까지) · (고정비) 위와 동일 	<p>이용 근거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또는 기타 증빙서류, 실제 지급받은 통장 거래내역 등)</p>	
	<p><분할지급 신청 의료기관></p> <p>○분할지급 신청서</p> <p>※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p>	-	<p><간이·정액 지급절차 선택 일반영업장></p> <p>○사업자등록증</p> <p>○간이 지급절차 동의서</p> <p>○영업 손실 근거 : 별도 제출 불필요</p>	-
	<p><전체폐쇄 의료기관></p> <p>: 의료부대사업 손실</p>	-	-	-

구분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p>※전체폐쇄 의료기관의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 청구는 의료기관이 각 영업장별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제출</p> <p>(각 영업장별)</p> <p>○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위탁·임대 영업장)</p> <p>○사업자등록증</p> <p>※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사업자등록증 제출 불필요)</p> <p>○위탁·임대계약서</p> <p>○일별매출장 (전체폐쇄조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p> <p>○영업 손실 근거 : 매출액 및 고정비 관련 서류</p> <p>※위의 약국, 일반영업장과 동일</p>			
	<장소공개 요양기관>			
	<p>○(의료기관) 별도 제출 불필요</p> <p>*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활용</p> <p>○(약국) 일별 매출장(정보공개일(당일)부터 7일까지)</p> <p>*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프로그램(POS, EDI, 기간별 조제현황 자료 등) 첨부)</p>		-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요양기관>			
	<p>○(의료기관) 별도 제출 불필요</p> <p>*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활용</p> <p>○(약국) 일별 매출장(폐쇄·업무정지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p> <p>*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p>		-	-

구분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지 자 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프로그램(POS, EDI, 기간별 조제현황 자료 등) 첨부			
	<p><의사·약사 입원·격리 요양기관></p> <p>○(환자 진료에 따른) 의사·약사의 입원·격리 시 입원·격리 근거(공문, 통지서)</p> <p>※(촉탁의·지도의사 등) 근로계약서, 근무표·역학조사서 등</p> <p>○(환자 진료에 따른) 의사·약사의 입원·격리 기간 동안 대체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급 근거(고용계약서 및 지출을 증빙하는 통장 거래내역 등)</p> <p>○ (일부 약사 입원·격리 시) 일별 매출장 (입원·격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p> <p>*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조제약+ 일반의약품 전체 판매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프로그램(POS, EDI, 기간별 조제현황 자료 등) 첨부)</p>		-	-
	<p><장소공개 요양기관></p> <p>○(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장소공개 근거 (공문, 지자체 홈페이지 화면, 역학조사서, 사후확인공문*, 지자체 브리핑자료, 홈페이지 로그기록 등)</p> <p>*장소공개 당시의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장소공개 했음(대상기관, 공개일 기재)을 사후에 확인하는 내부결재 공문</p>			
<p><의사·약사 입원·격리 요양기관></p> <p>○(청구인이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명령 근거(공문, 명령서), 입원·격리 통지서</p>		-	-	

구분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청구인	<표> 고정비 지출 증빙서류			
		고정비용 계정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불가능한 약국, 일반영업장 (기존사업자)	당해년도 신규 개설한 약국, 일반영업장 (신규사업자)
	1	급여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2019년)	급여지급이체내역(개업일~조치해당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개업일~조치해당월) * 근로자 개인정보는 삭제
	2	임차료	부동산 및 기계류 임대차계약서 (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상이한 경우 2019년 1년치 통장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
	3	광고선전비	광고선전계약서(2019년), 광고선전비 이체내역(2019년)	광고선전계약서(일회성/연속성 확인), 광고선전비 이체내역
	4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 (2019년 유효계약건, 영업장화재보험, 배상 책임보험, 영업용차량보험에 한함)	보험증권 사본 (영업장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영업용차량 보험에 한함)
	퇴직급여 기 타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유사업종 표준 고정비 적용		
※ 1~4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유사업종 표준 고정비 적용				

1 신청서

[공통]

□ 손실보상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붙임1]

○ 청구인은 반드시 법적 서식인 '손실보상청구서' 작성·제출

【참고】 손실보상청구서 작성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30일	
①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i>휴대전화번호, email 기재</i>	경영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
② 경영자 또는 소유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손실 세부사항	③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명칭	
	④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소재지	
	⑤ 요양기관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⑥ 손실 내용 <i>조사표 작성으로 같음합니다.</i>	
	⑦ 손실 발생기간 : <i>조사표 작성으로 같음합니다.</i>	
	⑧ 손실보상 요구 금액 : <i>조사표 작성으로 같음합니다.</i>	
	⑨ 손실보상 요구 금액 산출 근거 <i>조사표 작성으로 같음합니다.</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인 ⑩ 년 월 일 <small>(서명 또는 인)</small>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graph LR
      A[청구서 작성] --> B[접수]
      B --> C[심의 및 사실확인]
      C --> D[보상금액 결정]
      D --> E[지급]
      
```

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일반공지 60g/㎡)

○(①청구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정보, △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 공동사업자 정보 (나머지 공동사업자의 위임장 첨부),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정보(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재,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 e-mail 기재

○(②경영자 또는 소유자) △개인사업자 및 공동사업자인 경우 청구인과 동일,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대표자 정보 기재

○(손실 세부사항, ③~⑨)

- (③~⑤) △요양기관인 경우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소재지 주소, 요양기관기호 기재, △일반 영업장인 경우 영업장명(등록된 상호명), 영업장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사회 복지시설인 경우 시설명, 시설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장기요양기관기호 모두 기재

- (⑥~⑨) 별도의 조사표(시군구 작성)에 손실 세부사항의 상세내용을 작성하므로 '조사표 작성으로 같음'

○(⑩년월일) 손실보상 청구일자를 반드시 기재

□ (공동사업자) 손실보상 청구 위임장[붙임3]

- 청구인이 개인사업자 공동대표(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로부터 손실보상 청구를 대표 공동사업자에게 위임함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위임장' 작성·제출

【참고】 손실보상 청구 위임장(공동사업자용)

손실보상 청구 위임장 (공동사업자용)					
공 동 사 업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지 소 계	☎		업 종	
대 표 공 동 사 업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공 동 사 업 자					
①공 동 사 업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주 소	☎			
②공 동 사 업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주 소	☎			
③공 동 사 업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주 소	☎			
<p>* 전체 공동사업자 작성, 필요시 추가하여 작성</p> <p>공동사업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업무 일체를 대표공동사업자에게 위임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2 청구인 증빙서류

[공통]

□ 조치명령 근거, 조치이행 근거, 입금계좌 통장사본

○ (조치 근거) 지자체가 대상기관에 조치한 공문 또는 조치명령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상 ‘방역조치 관련 서식(참고)’으로 조치한 경우 동 서식을 조치명령서로 인정

※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가 증빙

○ (이행 근거) 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대상기관이 이행한 근거

- 지자체의 소독조치에 따라 대상기관에서 이를 이행한 경우 소독 증명서, 소독비용 영수증

※ 보건소가 직접 소독한 경우 서류 제출 불필요

- 지자체가 대상기관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경우 지자체 공문 또는 확인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서류

○ (통장 사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만일, 청구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통장 사본

【참고】 조치명령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서식14 방역조치 관련 서식

일시적 폐쇄 <input type="checkbox"/> 출입금지 <input type="checkbox"/> 이동제한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업무정지 <input type="checkbox"/> 소독 <input type="checkbox"/> 조치서														
해당 시설	명칭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조치의 내용	조치의 구분					이행기간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의료기관 업무정지	소독	2020. 00:00 ~2020. 00:00								
조치대상	범위	시설 전체			시설 일부 (범위 한정 시 구체적으로 기재)									
준수사항	<p>환자 이용 공간(구역)은 소독을 실시한 후, 시설별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해야 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이상) 사용하여 소독한 경우 충분히 환기한 다음 장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소독하고 다음날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호(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제2호(의료기관 업무정지), 제5호(소독)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의료기관 업무정지·소독실시를 조치합니다.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p>														
2020년 월 일														
〇〇〇 보건소장 (관인생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속</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위</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락처</td> <td></td> </tr> </table>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유의사항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일시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의료기관 업무정지·소독실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p>														

[대상기관 유형별]

□ (의료기관)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확인서

-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확인서[붙임4]
- (진료비 손실 근거) 별도 제출 불필요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활용

【참고】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확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확인서

청구인은 동 요양기관의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을 청구함에 있어 아래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완료하였고, 추가로 청구할 요양급여비용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소독 기간 및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이 포함된 해당 월까지
(약 국) 폐쇄·업무정지·소독 기간 및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

20 년 월 일

청구인 요양기관명 :
 대표자(개설자)명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내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 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됩니다.

□ **(전체폐쇄 의료기관 :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 의료기관에서 운영
(직영, 위탁·임대)하는 각 영업장(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의 **사업자등록증,
영업 손실 근거 등**

※ 전체폐쇄 의료기관의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 청구는 **의료기관이 각 영업장별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 (의료부대사업)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위탁·임대 영업장)

○ **사업자등록증**

※ 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사업자등록증 제출 불필요)

○ **위탁·임대계약서**

○ **일별매출장**(전체폐쇄조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 **(영업 손실 근거) 매출액 및 고정비 관련 서류**

※ 약국, 일반영업장과 동일

□ (약국, 일반영업장) 사업자등록증, 영업 손실 근거 등

○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확인서*

* 일반영업장은 제출 불필요

○ 사업자등록증

※ 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사업자등록증 제출 불필요)

○ (영업 손실 근거) 매출액 및 고정비 관련 서류

※ 다만, '20년 영업이익이 유리한 경우에는 '20년 기준으로 이의신청 가능하고
공적 증빙서류 발급가능 시점('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3월), 표준
재무제표증명(5~6월)) 이후 신청 가능

①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및 고정비)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②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 (매출액)

- (과세사업자)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19년 소득금액증명
- (면세사업자) 20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19년 소득금액증명
-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고정비) 고정비(급여,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에 대한 특이소요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고정비 지출 증빙서류(표) 참조)를 제출하되,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유사업종 표준 고정비 적용

- 기타 고정비(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는 일괄 유사
업종 표준 고정비 적용

③ 당해년도 신규사업장

- (매출액) 월별 매출장(개업월부터 폐쇄·업무정지 종료일까지)

- (고정비) 위와 동일

< 고정비 지출 증빙서류 >

	고정비용 계정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불가능한 약국, 일반영업장 (기존사업자)	당해년도 신규 개설한 약국, 일반영업장 (신규사업자)
1	급여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2019년)	·급여지급이체내역 (개업일~조치해당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개업일~조치해당월) * 근로자 개인정보는 삭제
2	임차료	·부동산 및 기계류 임대차계약서 (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상이한 경우 2019년 1년치 통장이체내역 첨부)	·임대차계약서
3	광고선전비	·광고선전계약서(2019년), ·광고선전비 이체내역(2019년)	·광고선전계약서 (일회성/연속성 확인), 광고선 전비 이체내역
4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 (2019년 유효계약건, 영업장화재 보험, 배상책임보험, 영업용차량 보험에 한함)	·보험증권 사본 (영업장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영업용차량보험에 한함)
기 타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유사업종 표준 고정비 적용	

※ 1~4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유사업종 표준 고정비 적용

※ '영업시간 외'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한 경우 영업손실액(기회비용)이 없으므로, 공통 서류(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폐업한 경우))를 제외한 **영업손실 근거서류 제출은 불필요**

(간이·정액 지급절차 선택 일반영업장) 사업자등록증, 간이지급절차
동의서[붙임10]

※ 영업손실 근거서류 제출 불필요

□ **(장소공개 요양기관)** 장소공개일(정보공개일)부터 7일까지의 진료비(영업) 손실 근거

○ **(의료기관)** 별도 제출 불필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활용

○ **(약국)**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라 지자체가 장소공개일(정보공개일)부터 7일까지의 **일별 매출장**

* 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 (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프로그램(POS, EDI, 기간별 조제 현황 자료 등) 첨부할 것)

* 예시) 정보공개일이 3.2인 경우 3.2.~3.8.(7일간)의 일별 매출장

※ 일별매출장 제출양식(예시)

일자	매출액 (A+B+C)	조제약			일반 의약품 (C)
		급여 약제비 (A)		비급여 약제비 (B)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000				

* 위 양식은 ‘매출관리프로그램’에서 출력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요양기관)** 폐쇄·업무정지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의 진료비(영업) 손실 근거

○ **(의료기관)** 별도 제출 불필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활용

○ **(약국)** 폐쇄·업무정지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의 **일별 매출장**

* 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 (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프로그램(POS, EDI, 기간별 조제 현황 자료 등) 첨부할 것)

* 예시) 8일 이상의 폐쇄·업무정지 종료일이 3.2인 경우 3.3.~3.9.(7일간)의 일별 매출장

※ 장소공개, 업무정지 등 조치된 약국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이후 산정 결과 매출 감소분이 없을 경우(실제매출액이 더 크거나, 영업시간 외 소독조치 등) 보상금이 없을 수 있음을 지자체에서 약국에 사전 안내

□ (의사·약사 입원·격리 요양기관) 입원·격리 통지서, 대체인력 고용 및 인건비 지급 근거, 격리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근거 등

※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의 전체 의사·약사가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인해 입원·격리되었거나,
- 2인 이상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약사의 격리비율이 50% 이상이면서, ▲격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기간 동안의 진료(영업)비 감소율이 70%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20.11.25.)
(환자 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입원·격리 조치된 경우 제외)

○ (격리 근거) 지자체가 의사·약사를 입원·격리 통보한 공문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 의료기관은 의사(약사, 간호사, 직원의 격리 근거는 제외), 약국은 약사의 격리 근거만 제출

*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입원·격리 통지서

※ **촉탁의·지도의사** 등 요양기관 외 시설에서 환자 진료에 따라 입원·격리 조치된 의사는 해당 시설과의 근로계약서, 근무표·역학조사서 등 추가 제출(손실보상 청구는 시설 소재지 보건소에서 접수)

○ (대체인력 고용 및 인건비 지급 근거) 의사·약사의 입원·격리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대체인력(의사·약사)을 고용하여 요양기관을 운영한 경우 고용계약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실제 인건비를 지급한 통장거래내역 등

○ (진료비(영업) 손실 근거 : 일부 의사·약사의 입원·격리)

- (의료기관) 별도 제출 불필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활용

- (약국) 일부 약사의 입원·격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일별 매출장**

* 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 (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프로그램(POS, EDI, 기간별 조제 현황 자료 등) 첨부할 것)

※ 산정 결과 진료비감소율이 70% 미만일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지자체에서 약국에 사전 안내

【참고】 입원·격리 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6. 4.>

입원 · 격리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원/격리 사유			
입원/격리 내용	입원일 / 격리 시행일		
	입원기간 / 격리기간		
	입원/격리 장소	<input type="checkbox"/> 병의원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시설 주소	
<p>귀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및 격리됨을 통지합니다.</p> <p>*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질병관리본부장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p>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 margin-left: 100px;">직인</div>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미이용자 조사표, 입원·격리 통지서, 서비스 미이용자의 상급침실이용 확인서류**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미이용자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이용자 중 지자체 조치(폐쇄, 격리 등)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자

○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 (시설급여기관) 기관의 조치기간 내 기관외 장소로 입원·격리된 자
- (재가급여기관) 기관의 조치기간 내 장기요양 급여계약이 통보*된 자

* 노인장기요양법 제27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4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계약통보서를 통보

○ **(미이용자 현황)** 대상기관의 조치이행기간 동안 서비스 미이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미이용자 조사표**[붙임6]

※ 대상기관의 조치이행기간 동안 서비스 미이용자 현황

○ **(급여비 손실 근거)** 별도 제출 불필요

*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등 활용

○ **(미이용자 근거)** 지자체 조치로 인한 서비스 미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입원·격리통지서** 또는 **지자체 공문**

※ 재가급여기관의 경우 입원·격리통지서 등 제출 불필요(시설급여기관만 제출)

○ **(상급침실이용 근거)** 서비스 미이용자가 상급침실을 이용하였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실제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서비스 미이용자 및 서비스 미이용자의 급여비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등을 통해 확인

3 지자체 증빙서류

□ (장소공개 요양기관)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장소공개 근거

-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라 지자체가 장소를 공개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공개기간 및 방법이 포함된 지자체 공문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지자체 홈페이지 캡처화면, 역학조사서, 사후확인공문*, 지자체 브리핑자료, 홈페이지 로그기록 등)

* 장소공개 당시의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장소공개 했음(대상 기관, 공개일 기재)’을 사후에 확인하는 내부결재 공문

□ (의사·약사 입원·격리 요양기관) 조치명령 근거, 입원·격리 통지서

※ 청구인이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증빙

- (조치 근거) 지자체가 대상기관에 조치한 공문 또는 조치명령서
- (격리 근거) 지자체가 의사·약사를 입원·격리 통보한 공문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3

접수·검토 및 제출 : 지자체(시군구)

- (접수·검토) 지자체(시군구)는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청구인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사실확인*** 등 검토
 - 단,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지자체가 기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제외
- (조사표 작성) 지자체(시군구)는 청구인에 대한 사실확인 등 검토한 내용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이하 '포털')에 구현된 조사표에 청구건별 작성
 - * 반드시 조사표에 작성한 내용과 아래 증빙서류의 내용은 일치해야 함
- (증빙서류 등록) 지자체(시군구)는 ①청구인의 제출서류(손실보상청구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구인 증빙서류) 및 ②지자체의 증빙서류가 작성한 조사표 내용과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 후 포털에 등록
 - * 파일명은 '서류명(시도-시군구-대상기관명)'으로 기재, 가능한 pdf파일로 변환하여 등록

ex) 제출 파일 예시

 손실보상청구서(서울-중구-○○약국).pdf

 사업자등록증(서울-중구-○○약국).pdf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울-중구-○○약국).pdf

* 의료기관은 제출 불필요

 통장사본(서울-중구-○○약국).pdf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울-중구-○○약국).pdf

 조치공문_조치명령서(서울-중구-○○약국).pdf

 자기격리통지서(서울-중구-○○약국).pdf

 소독비용영수증(서울-중구-○○약국).pdf

 장소공개공문(서울-중구-○○약국).pdf

<손실보상 업무시스템 운영 안내>

- △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를 위한 시스템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 구축
 -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손실보상 접수·실적 등 모니터링 가능
 - 보장기관인증서를 사용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붙임13]
 - * (접속경로) 마이페이지 > 코로나19관련 손실보상 관리 > 코로나19 손실보상 모니터링(시도)
 - 시·군·구는 해당 포털에 **조사표(검토내용)**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이후 처리상태 확인, 최종 결정통지서 발급
 - * (접속경로) 코로나관련신고 > 코로나19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지자체)
- △ 포털은 상시 운영하므로, 손실보상모니터링, 조사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은 상시 가능
- △ 시·군·구의 조사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미비 시 **보완 요청(반려)됨을 인지**

○ (공문 발송) 지자체(시군구)는 포털에 조사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후
손실보상청구서 등을 제출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로 직접 발송*
(월 2회 정도, 접수건수에 따라 지자체가 주기 조정)

- 이 때, 손실보상청구서 및 증빙서류는 포털에 등록된 자료로 같음하므로
붙임자료는 불필요

* 손실보상청구서 등의 제출은 공문을 통해 효력을 발생하며, 포털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임

【참고】 손실보상청구서 등 제출 공문 예시

○○시·군·구

수신 보건복지부장관

(경유)

제목 코로나19 손실보상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총 ○건)

1. 관련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020.○.○.)호
2. 우리 시(또는 군 또는 구)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손실보상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2020x00000000, 2020x00000000, 2021x00000000 ...

※ 포털에 조사표 작성시 자동부여된 접수번호(2020X00000000)로 기재

※ 접수 건이 여러 건인 경우 본문에 접수번호를 모두 기재하거나, 접수번호 목록을 붙임

붙임 : 손실보상 청구서 및 증빙서류(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등록). 끝.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시 ○○로 ○

/ http://

전화번호 0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0 / 0000@korea.kr

손실보상 청구건 조사표 작성방법

- ※ '손실보상 청구건 조사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조사표에 작성할 항목 및 증빙 자료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 ※ (접속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코로나관련신고 > 코로나19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지자체)
- ※ 반드시 조사표의 내용과 증빙서류의 내용은 일치해야 함
- ※ 손실보상청구서 상 손실보상 요구금액은 조사표에 작성하지 않음

1 공통 작성사항

□ 대상기관 정보

시도	시군구	요양기관 기호	사업자등 등록번호	장기요양 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영업장명 시설명	대표자명	기관담당자			간이· 정액 지급 절차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시도, 시군구) 대상기관 소재지 관할(손실보상 청구건을 접수한) 시도 및 시군구 선택
- (요양기관기호, 사업자등록번호, 장기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 약국은 요양기관기호, 일반영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기호를 반드시 기재

<대상기관 유형별 작성 항목>

기관유형	요양기관기호	사업자등록번호	장기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	필수 기재	선택 기재	-
약국	필수 기재	선택 기재	-
일반영업장	-	필수 기재	-
사회복지시설	-	선택 기재	필수 기재

- **(요양기관명, 영업장명, 시설명)** 의료기관, 약국은 요양기관기호 기재 시 요양기관명이 자동으로 표시(별도 기재 불필요)*,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은 기관명을 직접 기재
 -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상 요양기관 현황 정보를 활용하여 요양기관기호가 일치하면 요양기관명, 대표자명이 자동 표시
- **(대표자명)** 대상기관의 대표자명 기재(의료기관, 약국은 별도 기재 불필요,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은 직접 기재)
- **(기관담당자)** 대상기관의 손실보상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기재, 대표자가 기관담당자인 경우 대표자 정보 기재
 - * 청구서류 검토 및 심사 과정에서 연락 가능한 기관담당자 지정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기재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정확히 기재
 - * 예금주명에 상호명과 대표자명을 함께 기재된 경우 기재 순서, 띄어쓰기, 괄호() 등을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
- **(간이·정액지급 절차)** 일반영업장 중 간이·정액지급 절차로 신청한 경우 해당란에 체크(✓)
 - ※ 해당 항목은 일반영업장의 조사표에만 구현

□ 지자체 조치명령

※ 지자체가 조치한 공문, 명령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며, 작성한 조사표 내용과 공문·명령서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지자체(시군구)에 조사표 수정을 요청(조치명령 및 조사표 작성의 권한·책임은 지자체에 부여)

지자체 조치명령																
일자	방법	범위		내용							이행기간					
		전체	일부	일시 폐쇄	출입 금지	이동 제한	업무 정지	소독	정보 공개	기타	영업 시간 외	24 시간 운영	시작일시	종료일시	적용 기간 (일)	
20-02-15	서면			√				√			(법적근거) (조치내용)	√		20-02-15 15:00	20-02-18 15:00	3
20-03-01	서면						√	√					√	20-03-01 09:00	20-03-07 09:00	6
20-04-02	구두							√						20-04-02 18:00	20-04-02-2 0:00	0.5

◎ 관련근거: 법 제70조제1항제3호(업무정지), 제4호(일시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소독), 제5호(정보공개)
단,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는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 지자체 조치명령 근거자료는 반드시 첨부파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 지자체가 조치한 일자(월일) 기재
- **(방법)** 지자체가 조치한 방법을 서면/구두 중 선택
 - 원칙적으로 지자체는 서면(공문, 조치명령서)으로 조치하나, 당시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두 또는 전화 조치한 경우 반드시 지자체 증빙 필요
- **(범위)** 지자체가 조치한 내용의 범위를 전체/일부 중 해당란에 체크(√)
 - ※ 조치내용의 범위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체크(√)
- **(내용)**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일시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업무정지/소독/정보공개 중 조치한 모든 사항에 체크(√)하고, 기타는 조치내용 및 법적근거 직접 기재
 -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제2호로 인한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등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이행기간)** 지자체가 조치한 공문(또는 조치명령서) 상 기재된 이행기간을 시작일시(월일시분)와 종료일시(월일시분)로 구분하여 기재
 - 이행기간이 영업시간 외(진료·영업 종료 후~개시 전)인 경우 ‘진료·영업시간 외’ 항목에 체크(√)
 - * 이행기간이 진료·영업시간 외인 경우 보상 제외
 - 24시간 운영하는 영업장, 일반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9시) 이외 시간대에 운영하는 영업장은 ‘24시간 근무’ 항목에 체크(√) 및 기타전달사항 기재
 - *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업장임을 확인함’ 등 기재
 - * (일반영업시간 외 운영) ‘실제 운영시간 00시~ 00시’ 등 기재
 - 지자체가 조치명령 시 소독 후 환기를 일정 시간 권고하고 대상기관이 이를 준수한 경우 환기시간을 포함하여 이행기간 산정

ex) 소독 후 일정 시간 환기를 권고하고 대상기관이 이를 준수한 경우 조사표 작성 예시
공문 또는 조치명령서

조치내용	이행기간
(공문 또는 조치명령서) 소독	2020.02.15. 15:00 ~ 2020.02.15. 18:00
(구두 권고) 소독 후 환기	2시간 정도 후 사용 재개 권고

→

조사표	
이행기간	
시작일시	종료일시
20-02-15 15:00	20-02-15 20:00

- 2가지 이상 조치에 대한 이행기간이 중복될 경우 이행기간이 긴 조치의 이행기간으로 기재

ex) 2가지 이상의 조치에 대한 조사표 작성 예시
공문 또는 조치명령서

조치내용	이행기간
일시폐쇄	2020.02.15. 15:00 ~ 2020.02.18. 15:00
소독	2020.02.15. 15:00 ~ 2020.02.15. 18:00

→

조사표	
이행기간	
시작일시	종료일시
20-02-15 15:00	20-02-18 15:00

- 적용기간은 시작일시와 종료일시 사이의 기간으로 일 단위*로 자동 산정(별도 작성 불필요)
- * 1일 5시간 미만인 경우 0.5일로 산정

○ (증빙서류 - 조치명령근거) 지자체가 조치한 근거(공문/조치명령서 등)를 파일로 첨부

- 만일, 구두 또는 전화로 조치한 경우 조치근거는 조치결과를 보고한 내부결재 공문, 사후확인공문* 등으로 증빙(파일 첨부)

* 조치명령 당시의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조치명령 했음(조치명령일자 및 내용, 이행기간 등 기재)'을 사후에 확인하는 내부결재 공문

※ 공문 등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타 전달사항'에 사실확인 내용 기재

□ 대상기관 조치 이행

대상기관 조치 이행	
직접 이행(소독 등)	보건소 조치
소요비용(원)	
800,000	없음
없음	√

- (직접 이행) 지자체의 소독명령(조치)에 따라 대상기관이 직접 소독을 이행한 경우 소요비용(세액 제외)을 기재
 - (증빙서류 - 비용지출근거) 대상기관이 직접 이행한 근거(소독증명서, 영수증)를 파일로 첨부
- (보건소 조치)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체크(√)

※ 영업시간 외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한 기관

- ▶ (대상기관) 폐쇄 등 조치 없이 소독 조치만 있고*, 이를 영업시간 외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한 기관
 - * 요양기관의 경우 소독 조치 외 정보공개 또는 의사/약사의 자가격리 조치도 없는 기관
- (조치명령 - 이행기간) '영업시간 외' 항목에 체크(√)
- (조치이행) '보건소 조치' 항목에 체크(√)
- (증빙자료 첨부파일) 해당 기관에 안내한 근거(서면, 문자, 이메일 등 발송내역 등)를 등록

□ 시군구 담당자 정보 등

소속과	직급	이름	이메일	연락처 (사무실)	연락처 (핸드폰)	기타 전달사항

- (담당자 정보) 현재 소속과, 직급, 이름, 이메일, 연락처(사무실 핸드폰) 기재
- (기타 전달사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필요한 사항*, 사후 확인공문 제출 후 추가 확인사항, 공문으로 제출할 만큼의 주요내용은 아니지만 기타 손실보상 심사 시 참고할 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기재사항은 공문으로 같음)

* ex)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되는 각 호 및 구체적인 사유

2 추가 작성사항

<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

□ 영업손실 증빙자료(약국)

영업손실 증빙자료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장소공개
회복기간 일별매출장 (폐쇄, 업무정지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	정보공개기간 '일별매출장' (정보공개일 당일 포함 7일)
√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약국)**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약국의 일별 매출장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란에 모두 체크(√)하고, 해당 서류를 파일로 첨부
 - ※ 의료기관은 별도 제출 불필요
- **(장소공개 약국)**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라 지자체가 장소를 공개한 약국의 일별 매출장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란에 모두 체크(√)하고, 해당 서류를 파일로 첨부
 - ※ 의료기관은 별도 제출 불필요

□ 지자체 장소공개 여부(의료기관, 약국)

지자체 장소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
공개일자 (반드시 장소공개근거 제출)	
20-02-16	
	√

- (공개)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라 지자체가 장소를 공개한 요양기관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공개된 일자(월일) 기재
 - (증빙서류 - 장소공개근거) 지자체가 요양기관의 장소를 공개한 근거(공문, 홈페이지 화면, 역학조사서, 사후확인공문*, 지자체 브리핑자료, 홈페이지 로그기록 등)를 파일로 첨부
 - * 장소공개 당시의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장소공개 했음 (대상기관, 공개일 기재)을 사후에 확인하는 내부결재 공문
- (비공개) 지자체가 요양기관의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체크(√)

□ 의사/약사 입원·격리 여부

- ※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의 전체 의사·약사가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인해 입원·격리되었거나,
 - 2인 이상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약사의 격리비율이 50% 이상이면서, ▲격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기간 동안의 진료(영업)비 감소율이 70%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20.11.25.)
 (환자 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입원·격리 조치된 경우 제외)

기관명	의사/약사 입원·격리 여부				
	전체 의사/약사수 (명)	입원·격리 의사/약사수 (명)	입원·격리 의사/약사명	격리기간	
				시작일	종료일
OO의원	1	1	○○○	20-02-15	20-03-01
OO약국	3	2	○○○	20-03-01	20-03-14
			○○○	20-03-01	20-03-14

- (전체 의사/약사수) 지자체가 입원·격리 조치한 의사/약사의 조치 기간 동안 대상기관에 소속된 실제 의사/약사 수 기재
 - ※ 당시 실제 의사/약사 수를 기재하되,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된 의사/약사 수 정보 활용
- (입원·격리 의사/약사수) 지자체가 입원·격리 조치한 의사/약사 수 기재
 <입원·격리 의사/약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에 대한 정보를 모두 기재>
- (입원·격리 의사/약사명) 지자체가 입원·격리 조치한 의사/약사 성명
- (격리기간) 지자체가 입원·격리 조치한 기간을 시작일(월일)과 종료일(월일)로 구분하여 기재
- (증빙서류 - 입원·격리근거) 지자체가 입원·격리 조치한 근거 (입원·격리 공문/입원·격리 통지서 등)를 파일로 첨부

□ (의사/약사의 입원·격리로 인한) 휴업 여부

(의사/약사의 입원·격리로 인한) 휴업 여부	
휴업	영업 지속
√	
	√

- (휴업) 의사/약사의 입원·격리로 인해 의료기관/약국을 휴업한 경우 해당란에 체크(√)
- (영업 지속) 의사/약사가 입원·격리하였으나, 의료기관/약국의 영업을 지속한 경우 해당란에 체크(√)

□ (영업 지속 시) 대체인력 고용 여부

(영업 지속 시) 대체인력 고용 여부		
대체인력 고용	대체인력 미고용	
인건비(원) (반드시 인건비 지출근거 제출)	일부 의사/약사로 진료	기타
1,200,000	-	-
-	√	-

- (대체인력 고용) 의사/약사의 격리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 기재
 - (증빙서류 - 인건비 지출근거) 대체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 지출근거 (고용계약서/통장거래내역* 등)를 파일로 첨부
 - *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 (대체인력 미고용) 의사/약사의 격리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일부 의사/약사만으로 의료기관/약국의 영업을 지속한 경우 해당란에 체크(√)
 - 그 외 방법으로 영업을 지속한 경우 기타란에 직접 기재

< 약국, 일반영업장 >

□ 영업손실 증빙자료

영업손실 증빙자료 1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제출(필수)			
사업자등록증 (필수)	폐업 시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	
	폐업사실증명원	회복기간 일별매출장 (폐쇄·업무정지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	장소공개* 정보공개기간 '일별매출장' (정보공개일 당일 포함 7일)
√			
		√	
	√		

*약국만 해당

영업손실 증빙자료 2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불가능												
전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 발급 가능	기존 사업장						신규 사업장					
	매출액			고정비용(선택)			매출액		고정비용(선택)			
전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필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과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필수)	급여	임차료	광고선 전비	보험료	월별매출장 (개업월부터 폐쇄·업무정지 종료월까지)	급여	임차료	광고선 전비	보험료
		√	√	√				√	√	√		√

○ (모든 항목)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의 해당란에 모두 체크(√)하고, 해당 서류를 파일로 첨부

- 고정비용의 경우 해당 계정의 증빙서류가 제출되면 해당 계정에 체크(√)

* 예)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급여, 임차료 란에 체크

< 고정비 지출 증빙서류 >

	고정비용 계정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불가능한 약국, 일반영업장 (기존사업자)	당해년도 신규 개설한 약국, 일반영업장 (신규사업자)
1	급여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2019년)	급여지급이체내역(개업일~조치해당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개업일~조치해당월) * 근로자 개인정보는 삭제
2	임차료	부동산 및 기계류 임대차계약서 (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상이한 경우 2019년 1년치 통장이체내역 첨부)	임대차계약서
3	광고선전비	광고선전계약서(2019년) 광고선전비 이체내역(2019년)	광고선전계약서(일회성/연속성 확인), 광고선전비 이체내역
4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2019년 유효계약건, 영업장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영업용차량보험에 한함)	보험증권 사본(영업장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영업용차량보험에 한함)
기 타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유사업종 표준 고정비 적용	

※ (1~4)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유사업종 표준 고정비 적용

<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

- ※ 어린이집,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 ※ 손실보상 대상시설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일시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또는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시설이며,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방적 조치기관은 해당되지 않음

□ 서비스 미이용자로 인한 손실

: 폐쇄 또는 격리 조치로 인한 서비스 미이용자별 내용 작성

서비스 미이용자로 인한 손실						
미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6자리 (생년월일)	미이용기간		상급침실 이용(반드시 이용근거 제출)		
		시작일	종료일	1인실	2인실	이용안함
홍길동		20-02-20	20-02-28	-		

- (미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미이용기간) 서비스 미이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6자리(생년월일), 미이용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 (증빙서류 - 서비스 미이용자 근거) 서비스 미이용자 확인 및 미이용기간 근거(입원·격리통지서* 또는 지자체 공문)를 파일로 첨부
 - ※ 재가급여기관의 경우 입원·격리통지서 등 제출 불필요(시설급여기관만 제출)
- (상급침실 이용) 서비스 미이용자가 상급침실을 이용한 경우 미이용기간 직전일 기준 1인실/2인실/이용안함 중 해당란에 체크(√)
 - (증빙서류 - 상급침실이용근거) 서비스 미이용자가 상급침실을 이용한 근거(본인부담금수납대장 또는 기타증빙서류/통장거래내역)를 파일로 첨부

< 전체 폐쇄 의료기관 : 의료부대사업 >

□ 영업장 정보

구분	유형	상호명	대표자	손실보상 담당자			기타 전달사항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 (구분) 2019년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상 의료부대손익계정에 따른 분류를 장례식장/주차장/매점등수익/기타의료부대수익 중 선택
- (유형) 영업장 운영유형을 직영/위탁/임대 중 선택
- (상호명) 영업장별 상호명 기재
- (대표자) 직영인 경우 의료기관의 대표자명, 위탁/임대인 경우 영업장별 대표자명 기재
- (손실보상 담당자) 영업장별 손실보상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기재, 대표자가 손실보상 담당자인 경우 대표자 정보 기재
* 청구서류 검토 및 심사 과정에서 연락 가능한 담당자 지정
- (기타 전달사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필요한 사항, 기타 손실보상 심사 시 참고할 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4 심사·결정·지급 (보건복지부)

1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손해사정사회)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심사기관>

구 분	손실보상 대상유형	심사기관
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한 의료기관	① ② ③ ④ ⑤	심평원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한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② ③ ⑥ ⑦	심평원 (손해사정사회)

○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되, 손실보상 심사(손실현황 파악 및 보상금 산정)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수행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자료(요양급여비용 심사 결정금액 등)를 활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직접 심사

-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실질적 영업손실액을 파악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므로 손해사정전문기관(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수행(용역)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계 분야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감정·평가·조사 수행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손실보상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2 결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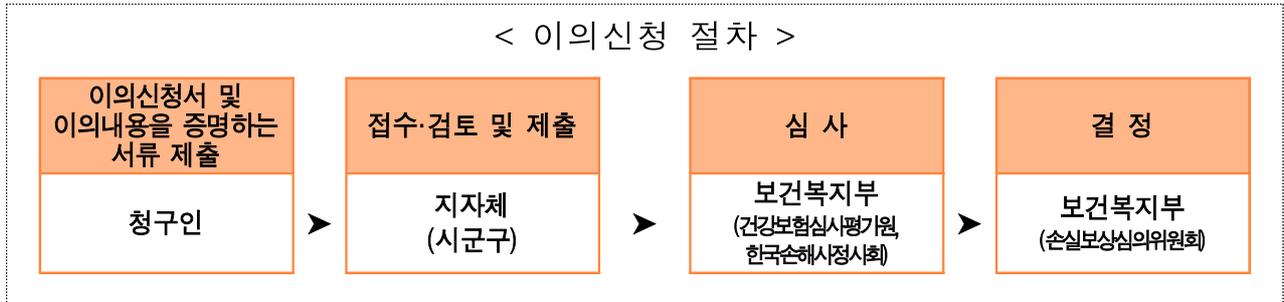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을 최종 심의·의결

3 지급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최종 심의·의결된 청구건별 손실보상금 내역을 보건 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등록하고, 그 내역을 지자체(시군구)에 통보
- 이후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직접 지급
- 지자체(시군구)는 신고포털*에서 청구건별 손실보상 결정통지서[붙임11]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개별 안내(서면, 이메일, 팩스 등)

* (접속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코로나관련신고 > 코로나19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지자체)





- 청구인은 결정·지급된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임의서식, 이의신청 사유를 상세히 기술) 및 이의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시군구)에 제출
 -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 이의신청건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이의신청 결정의 종류>

- (인용) 이의신청 중 전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하는 결정
- (부분인용) 이의신청 중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하는 결정
- (기각)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하지 않은 결정
- (각하) 이의신청의 형식적인 요건(절차·기간 등)에 흠결이 있어 수용하지 않은 결정

- 지자체(시군구)는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최초 청구건과 동일하게 처리

< 손실보상 업무흐름도 >

구 분	주 체	내 용
대상기관 선정 및 사전안내	지자체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보상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보상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및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시군구)에 제출
접수·검토 및 제출	지자체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서 및 증빙서류 접수 및 검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조사표(검토내용)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 보건복지부에 손실보상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 (공문 발송)
심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손해사정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을 통해 손실보상 청구건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약국, 일반영업장 등) 한국손해사정사회
결정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 최종 심의·의결
지급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심의·의결된 손실보상금 내역을 지자체(시군구)에 통보 ▸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이의신청)	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지급된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임의서식) 및 이의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시군구)에 제출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최초 청구건과 동일하게 처리

V. 지자체 조치사항

- 지자체는 손실보상 전담부서(인력)를 지정·배치하여 손실보상청구 접수 신속 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자료 중 지자체 협조사항>

- ▶ (총리 주재, '20.6.28) 7월 중 각 시군구 단위 손실보상 전담부서(인력) 지정 또는 배치하여 손실보상 접수 및 검토절차 준비할 것
- ▶ (장관 주재, '20.8.29) 폐쇄·소독조치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접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 전담부서에서 대상기관 안내, 청구 서류 접수 등 신속 실시
 - * 시·군·구 전담부서가 지정된 9개 시·도(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 이외의 8개 시·도 및 시·군·구는 조속히 지정하여 중수본에 통보 요청

- 손실보상 대상기관 선정 및 사전 안내
 - '20.6월 이전 손실발생 기관부터 우선 선정하며, 대상기관이 청구 서류 등을 준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붙임7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 참조)
- 손실보상 청구건을 접수하여 사실확인 등 검토, 필요시 지자체 증빙서류 첨부
- 검토한 내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구현(7.27)된 조사표에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후 손실보상청구서 등을 제출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로 직접 발송 (⇨ 상시적인 접수체계 유지)
- 최종 심의·의결된 손실보상금 내역*을 청구인에게 통지
 -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청구인별 손실보상 결정통지서 출력 가능
- 이후 이의신청건 접수 시 최초 청구건과 동일하게 처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i>휴대전화번호, e-mail 기재</i>	경영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
	주소	
경영자 또는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손실 세부사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명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소재지	
	요양기관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손실 내용 <i>조사표 작성으로 같습니다.</i>	
	손실 발생기간 <i>조사표 작성으로 같습니다.</i>	
	손실보상 요구 금액 <i>조사표 작성으로 같습니다.</i>	
	손실보상 요구 금액 산출 근거 <i>조사표 작성으로 같습니다.</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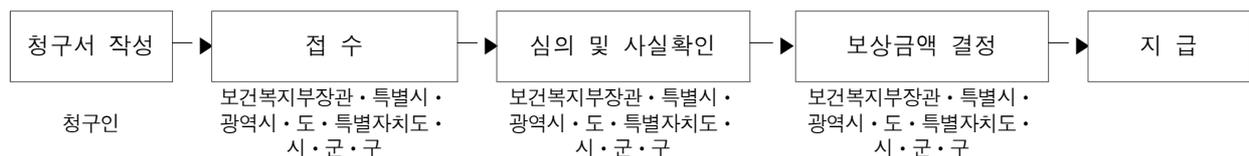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

손실보상 청구 위임장 (공동사업자용)					
공 동 사 업 장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		업 종	
대 표 공 동 사 업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공 동 사 업 자					
①공 동 사 업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주 소	☎			
②공 동 사 업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주 소	☎			
③공 동 사 업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주 소	☎			
<p>* 전체 공동사업자 작성, 필요시 추가하여 작성</p> <p>공동사업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업무 일체를 대표공동사업자에게 위임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

-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보상 항목
○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경우 회복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요양기관)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5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 동안의 진료(영업) 손실
○ (기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폐쇄·출입금지·소독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손실보상청구서 및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심사전문기관*에서 산정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관), (사)한국손해사정사회(약국, 일반영업장 등)
- 손실보상 청구부터 지급까지는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지급하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임의양식, 이의신청사유 상세 기술) 및 이의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함)

□ 아울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을 됴 알려 드립니다.

※ 일반영업장의 경우 간이지급절차도 신청 가능함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붙임 1. 손실보상 청구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손실보상금 입금계좌

3.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확인서

4.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청구서류

문의처	담당자	○○○	연락처	000-0000-0000 ○○@korea.kr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진료(영업)시간 외 보건소 직접 소독한 기관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손실보상금 미지급 안내문

-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귀 기관의 경우 폐쇄·업무정지 등의 조치 없이 ‘소독’ 조치만 이루어졌으며, 그 소독도 ‘진료(영업)시간 외’ 시간에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보상 항목
○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경우 회복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기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폐쇄·출입금지·소독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문의처	담당자	○○○	연락처	000-0000-0000 ○○@korea.kr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손실보상 청구 안내

-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 일반영업장의 손실보상 지급절차는 ①일반지급절차와 ②간이지급절차가 있으며, 청구인은 하나의 절차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지급절차: 국세청의 세금신고자료 등 매출증빙자료(6종)*에 따라 전년도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

* '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소득금액증명 포함), 고정비 지출 증빙서류(급여,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 (영업이익) 총매출액-총비용[고정비용+변동비용], (고정비용 8종)

급여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제수당	임차료	부동산 및 기계류 임대차계약상 임차료
퇴직급여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감소분 비용
복리후생비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선전 등 지출비용
세금과공과	조세, 부과금 등	보험료	유형자산, 재고자산의 화재보험 또는 손해보험료

② 간이지급절차: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불요, 폐쇄·업무정지·소독기간에 관계없이 정액(100,000원) 지급

※ 일반영업장에만 해당(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 청구인은 (1)지자체(시군구)에 폐쇄·소독명령 사실유무 확인 후 (2)전년도 영업이익 등 확인하여 보상금 예측해 손실보상 청구방법을(일반 또는 간이지급) 선택합니다.

1. 예상 손실보상금이 정액(100,000원)보다 낮을 경우, 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2. 일반지급절차를 선택한 경우, 산정된 보상금이 정액(100,000원)보다 낮을 경우에도 일반지급절차로 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됨

※ 일반지급절차로 산정 시 세금신고를 적게 했을 경우 실제 영업이익과 다를 수 있음

< 보상금 지급절차 비교표 >

구 분	일반지급절차	간이지급절차
심사절차	소독조치 이행확인[지자체]→ 매출액 증빙서류[10종] 제출 및 심사→ 심의→ 지급	소독조치 이행확인[지자체] →지급
제출서류	1. 손실보상 청구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입금계좌 통장사본 4. 매출액/고정비 등 영업손실근거서류(6종)	1. 손실보상 청구서(개인정보동의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 4. 간이지급절차동의서
소요시간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후 3개월 소요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후 1개월 소요
손실보상금	전년 매출액과 소독기간 적용, 산출금액 지급 (0원~)	정액 100,000원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자체소독 시 소독비)은 별도지급

원청구

○ 결정통지서 -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용 / (분할지급) 1차 지급용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청구인	기관명	대표자명		
지급대상 여부	지급대상 <input type="checkbox"/> (분할지급 <input type="checkbox"/>)		지급대상 아님 <input type="checkbox"/>	
결정내역	지급액(a+b)	직접비용(a)	기회비용(b)	
	원	원	원	
	1일당 진료비 또는 영업손실액		원	손실보상대상기간
				일
	<p>▶(직접비용) 정부·지자체의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p> <p>▶(기회비용) 해당 시설·장비·인력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비용으로 일반영업장은 소독·폐쇄·업무정지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액,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은 소독·폐쇄·업무정지기간 및 회복기간·정보공개기간·자가격리기간을 고려한 진료(영업) 손실액 (단,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명령이행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진료비 또는 영업손실액 차감)</p> <p>▶1일당 진료비 = {(a)급여진료비} + {(b)비급여진료비} ÷ (c)연간평균 영업일수</p> <p>①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19년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1 + '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1 + '21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p> <p>② 비급여진료비 = {상기 ①급여진료비 ÷ '19년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 포함)} - {상기 ①급여진료비}</p> <p>③ 연간평균 영업일수 = 365일(입원실 미보유 의원급 299일, '19년 이후 개설은 '19년 영업일수)</p> <p>▶1일당 영업손실액 = ('19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0년 1~12월 평균 물가상승률) ÷ (365일)</p> <p>* 입원실이 없는 의원 및 약국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299일로 함.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공휴일 중 근무 사실을 입증할 경우, 영업일을 365일로 계산</p> <p>※ 다만, '20년 영업이익이 유리한 경우에는 '20년 기준으로 이의신청 가능하고 공적 증빙서류 발급 가능 시점('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3월), 표준재무제표증명(5~6월))이후 신청 가능</p> <p>▶손실보상대상기간 : 일반영업장은 소독·폐쇄·업무정지기간,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은 소독·폐쇄·업무정지기간 및 회복기간, 정보공개기간, 자가격리기간을 고려한 기간(종복기간 제외)</p>			
위와 같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p><안내사항></p> <p>○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분할지급 대상기관은 최종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관할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p> <p>*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p> <p>○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됩니다.</p>				

○ 결정통지서 - 사회복지시설용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청구인	기관명	대표자명	
지급대상 여부	지급대상 <input type="checkbox"/> 지급대상 아님 <input type="checkbox"/>		
결정내역	지급액(a+b)	직접비용(a)	기회비용(b)
	원	원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비용) 정부·지자체의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기회비용) 지자체 조치(폐쇄 등)로 인한 서비스 미이용자의 급여비 및 상급침실이용료(비급여) 손실 ▶급여비 손실 = {(미이용자(명) × (1일당급여비) × (폐쇄·코호트격리조치 이행일수) × (1-시설유형별변동비용비율))} - {미이용자 급여비 등 정부지원액} ▶상급침실이용료 손실 = (미이용자 1일당 평균상급침실이용료) × (폐쇄·코호트격리조치 이행일수) 		
<p>위와 같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p> <p style="font-size: 1.2em;">20 년 월 일</p> <p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보건복지부장관</p>			
<p><안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관할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li style="padding-left: 20px;">*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됩니다. 			

○ 추가지급/정산/환수 결정통지서 - 모든 대상기관용 / (분할지급) 2차 지급용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추가지급·정산·환수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청구인	기관명	대표자명	
결정내역	결정액	기 지급액	추가지급액/정산액/환수액
	원	원	원
결정이유			
<p>위와 같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보건복지부장관</p>			
<p><안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분할지급 대상기관은 최종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관할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됩니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 모든 대상기관용

코로나19 손실보상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이의신청)		접수번호 (원청구)	
청구인	기관명	대표자명	
결정사항	인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인용 <input type="checkbox"/> 기각 <input type="checkbox"/> 각하 <input type="checkbox"/>		
지급결정 내역	이의신청 결정액(a)	원청구 지급액(b)	추가 지급액(a-b)
이의내용			
결정이유			
<p><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이 손실보상 이의신청을 결정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보건복지부장관</p>			
<p><참고사항></p> <p>○ 인용 : 이의신청 중 전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하는 결정</p> <p>○ 부분인용 : 이의신청 중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하는 결정</p> <p>○ 기각 : 이의신청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하지 않은 결정</p> <p>○ 각하 : 이의신청 형식적인 요건(절차·기간 등)에 흠결이 있어 수용하지 않은 결정</p>			

*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결과
이의신청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경영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
	주소	

이의신청
사유
(상세 기재)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결과에 대해 상기 사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코로나19 손실보상 모니터링 화면 접속방법

-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 ② 우측상단 로그인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보장기관 인증서 사용)



- ③ 코로나19 손실보상 모니터링 화면 접속
- 메뉴: 마이페이지 > 코로나19 손실보상 모니터링(시도)



□ 코로나19 손실보상 모니터링 방법

① 해당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현황 조회

- 시군구 및 제출현황 목록 클릭하여 상세현황 조회 가능
- 엑셀저장 버튼 클릭하여 제출현황 및 상세현황 엑셀저장 가능

홈 마이페이지 > 코로나19관련 모니터링 > 코로나19 손실보상 모니터링(시도)

시군구 전체 [조회]

○ 제출현황 엑셀저장 총: 9 건

순번	시군구	제출완료(건)	보완(건)	산출의뢰(건)	지급결정(건)	이의신청(건)	손실보상금액(원)
1	종로구	1	0	1	0	0	
2	영등포구	1	1	0	0	0	
3	광진구	11	0	0	0	0	
4	중구	3	0	2	1	0	

(*) 제출현황 목록 클릭 시 해당 시군구의 상세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세현황 엑셀저장 총: 4 건

순번	대상유형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지역		지급대상 여부	조치명령 일자	범위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상호명 (요양기관명)	대표자명	시도	시군구			전체	일부	일시 폐쇄
1	의료기관	2020-08-13	1020x90000024	11100010	국립의료원		서울	중구		2020-07-21			
1	의료기관	2020-08-13	1020x90000024	11100010	국립의료원		서울	중구		2020-07-28			○
2	일반영업장	2020-08-07	2020x90000130	5978100842	케이투어스토리		서울	중구		2020-02-28			○
3	일반영업장	2020-08-14	2020x90000131	2011715424	YH.KIM		서울	중구		2020-02-28			○

※ 해당 시도 관할 시군구만 모니터링 가능

□ [참고] 시도별 보장기관 계정

순번	계정	시도명	비고
1	nana3803	서울특별시청	
2	dhchaa	부산광역시청	
3	iccity	인천광역시청	
4	qhrjsrhk11	대구광역시청	
5	gwangju	광주광역시청	
6	daejeon0421	대전광역시청	
7	hhealth1399	울산광역시청	
8	gyeonggi	경기도청	
9	jcwbook6881	강원도청	
10	mass0008	충청북도청	
11	namoo511	충청남도청	
12	ohm9191	전라북도청	
13	iamejp1	전라남도청	
14	sangmian	경상북도청	
15	pks0624	경상남도청	
16	suki25	제주특별자치도청	
17	sejong3883	세종특별자치시청	

□ 코로나19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화면 접속방법

-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 ②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보건소 인증서 사용)

③ 코로나19 손실보상조사표 작성(지자체) 화면 접속

- 메뉴경로: 코로나관련신고 > 코로나19 손실보상조사표 작성(지자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로그인 통합 신고조회 서면신고진행조회 회원가입 고객센터

개설신고-변경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코로나관련신고**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마이페이지

코로나19관련 현황신고
음압병상 운영현황 신고
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현황 신고
감염병전담병원 치료병상 운영현황 신고

코로나19관련 손실보상 신고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의료기관)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지자체)

휴·폐업
병·의원 및 약국 휴·폐업 신고

관계기관정보 등록
관계기관(협회, 의회 등) 관리정보 등록

병·의원 및 약국 개설신고 절차

대표자 본인인증 > 개설신고 > 개설완료 > 지급계좌 신고 > 요양기초 부여 > 요양기관 회원가입 > 요양기관 인증서발급

건강보험공단
인증서 등록

공지사항

수출실 환자 안전관리로 추가산출 관련 요양기관 현황.. 2019-05-10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관련 의료인력 신고방법 .. 2019-05-10
구순구개열의 치료과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간 신고.. 2019-05-10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간호인력 신고방법안내 2019-04-03
2019년 2분기 검체검사 결과 산출 조회 2019-04-03
중환자실 견당전문의 가산수가관련 고시 일부개정예 .. 2019-04-03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 2019-04-03
2019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 2019-04-03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온라인 출력 재안내 2019-04-03

요양기관 현황 신고 기관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기관

- 1 개설신고
병의원개설, 약국개설
- 2 지급계좌신고
요양기관 지급계좌, 원구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번호
- 3 시설·인력·장비 신고
시설·인력 상세, 일반·전방·특수 장비
- 4 식대·차등제신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입원료 차등제, 원화의료 수가제

공인인증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안프로그램설치 뷰어다운로드

신/구패뉴비교표 관련사이트 이동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우편번호 26465)
Copyright © 2018 by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고객센터: 1644-2000 원격지원요청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통합 신고조회 서면신고진행조회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개설신고-변경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코로나관련신고**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마이페이지

코로나관련신고 <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지자체)

코로나19관련 현황신고
코로나19관련 손실보상 신고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의료기관)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지자체)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지자체)

청구 구분 선택 대상 유형 선택 처리 상태 선택 요양기관기호 (사업자등록번호) 대상기관명 Q 조회

조회결과

역설저장 신규 작성 총: 0 건

순번	접수번호	청구구분	대상유형	장기요양기관요양기관기호사업자등록번호	대상기관명	작성일시	처리상태	지급일	제출자	지역	신청경로	정렬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의: 본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우편번호 26465)
Copyright © 2018 by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고객센터: 1644-2000 원격지원요청

④ 조회결과 목록 화면에서 제출내역 확인

- 제출완료 건은 조회 버튼 클릭하여 조회 가능(제출내역 수정불가)
- 임시저장 건은 수정 버튼 클릭하여 내용 수정 및 최종 제출 가능

코로나관련신고 > 코로나19관련 손실보상 신고 >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지자체) 점검요청

청구구분 선택 | 대상유형 선택 | 처리상태 선택 | 요양기관기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상기관명 Q 조회

○ 조회결과 역방지방 신규 작성 총: 156 건

순번	접수번호	청구구분	대상유형	장기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기호	사업자등록번호	대상기관명	작성일시	처리상태	지급일자	제출자료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1		원청구	의료부대사업					2020-10-26 16:58:21	제출완료		조회		
2		원청구	일반영업장					2020-10-26 11:24:42	작성중		수정		
3		이의신청	일반영업장					2020-10-23 14:55:24	제출완료		조회		
4		원청구	일반영업장					2020-10-13 17:41:41	제출완료		조회		
5		원청구	일반영업장					2020-10-13 15:34:59	제출완료		조회		
6		원청구	일반영업장					2020-10-08 16:41:52	산출완료		조회		
7		원청구	일반영업장					2020-10-08 15:13:38	산출완료		조회		
8		원청구	일반영업장					2020-10-08 13:37:45	산출완료		조회		
9		원청구	일반영업장					2020-10-08 14:22:38	산출완료		조회		
10		원청구	일반영업장					2020-10-07 17:23:10	산출완료		조회		
11		원청구	일반영업장					2020-10-07 11:29:30	산출완료		조회		
12		원청구	일반영업장					2020-10-07 11:22:01	산출완료		조회		

□ [이의신청] 코로나19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방법

① 조회 결과 화면에서 이의신청 신청 버튼 클릭

* 지급일자 기준 30일 이내 시스템에 이의신청 등록

순번	결수번호	청구구분	대상유형	결제요청기관번호	요청기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상기관명	작성일자	처리상태	지급일자	제출자료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41		통상구	일반영입장						제출완료		조회		
42		통상구	일반영입장						산출완료		조회		
43		통상구	일반영입장						산출완료		조회		
44		통상구	일반영입장						산출완료		조회		
45		통상구	일반영입장						보관완료		조회		
46		통상구	일반영입장						보관완료		수정		
47		통상구	일반영입장						지급완료	2020-10-29	조회	신청	통지

② 작성화면에서 내용입력 후 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자료 제출

* 항목별 상세설명은 '조사표 작성방법' 참조

③ 조회결과 목록 화면에서 제출내역 확인

- 제출완료 건은 조회 버튼 클릭하여 조회 가능(제출내역 수정불가)

순번	결수번호	청구구분	대상유형	결제요청기관번호	요청기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상기관명	작성일자	처리상태	지급일자	제출자료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1	2020-0000000	위탁신청	일반영입장					2020-11-02 11:29:25	제출완료		조회		
2	2020-0000001	통상구	위탁기관					2020-10-12 11:26:02	제출완료		조회		
3	2020-0000000	통상구	위탁기관					2020-10-12 11:23:36	제출완료		조회		
4	2020-0000001	통상구	연계					2020-10-12 11:16:05	제출완료		조회		
5	2020-0000000	통상구	위탁기관					2020-10-12 11:16:05	제출완료		조회		

□ [별첨] 대상유형별 작성 화면

○ 의료기관

입사처음
최종제출
목록

○ 대상기관 정보(의료기관)

시도	시군구	요양기관기호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명	대표자명	기관 담당자			분할지급 신청
선택	선택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이름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① 요양기관기호 입력 후 조회(핸터입력 또는 버튼클릭)하면 시도, 시군구, 요양기관명, 대표자명은 자동설정 됩니다.

○ 대상기관 정보(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지자체 조치명령 및 조치이행 내역 행추가 행사제 총 : 1 건

순번	일자	방법	범위		내용					이행기간			적용이행 (소득 등 소외비용 (원))	보검소 조치	
			전체	일부	임시 폐쇄	출입 금지	이동 제한	업무 정지	소득	정보 공개	기타	영업 시간 외			24시간 운영
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① 관련근거: 법 제70조제1항제3호(업무정지), 제4호(임시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소득), 제5호(정보공개)
단,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는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대상이 아님.
① 지자체 조치명령 근거자로는 반드시 첨부파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감소공개 내역 행추가 행사제 총 : 0 건

순번	공개(공개일자)	비공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지자체 감소공개 시 관련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지자체 조치 명령 내용 중 정보공개 선택 시에만 공개(공개일자)입력이 가능합니다.

○ 자가격리 여부, 휴업 여부, 대체인력 고용 여부 내역 행추가 행사제 총 : 1 건

순번	(확진자 발생-경유로 인한) 의사 자가격리 여부					의사 자가격리로 인한 휴업 여부		(영업 지속 시) 대체인력 고용 여부			
	전체 의사수	자가 격리 의사수	자가 격리 의사명	격리기간	종료일	휴업	영업 지속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원)	일부 의사로 진료	기타
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① 자가격리 시 관련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1번 순번에 모든 값을 입력 후 행추가를 해야 최종제출이 가능합니다.

소속과	직급	이름	이메일	연락처(사무실)	연락처(핸드폰)	기타 전달사항
<input type="text"/>						

○ 보완요청 내용

○ 증빙자료 첨부파일 ① 첨부파일 1개당 5MB, 전체 첨부파일 용량은 5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파일추가 ✕ 삭제 ↓ 다운로드

파일명	파일용량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입사처음
최종제출
목록

○ 일반영업장

입시지원
비용계산
목록

○ 대상기관 정보(일반영업장)

시도	시군구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명	대표자명	기관 담당자			간이-정액 지급일자
					이름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선택	선택							<input type="checkbox"/>

○ 대상기관 정보(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명

○ 지자체 조치명령 및 조치이행 내역 발송기 받기 총 : 1 건

순번	일자	방법	지자체 조치 명령										영업장 조치 이행					
			전체	일부	일시 폐쇄	출입 금지	이동 제한	소독	정보 공개	기타	영업 시간 외	24시간 운영		시각일시	종료일시	적용 기간	각종이행 (소독 등) 소요비용 (원)	보전소 조치
1		선택	<input type="checkbox"/>															

① 관련근거: 법 제70조제1항제2호(업무중지), 제4호(일시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소독)
 단,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제한 또는 영업중지는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대상이 아님.
 ② 지자체 조치명령 근거자료는 반드시 첨부파일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영업손실 증명자료

사업자 등록종 (필수)	전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 발급 가능		전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 불가											
	과업 시	과업 사실 증명권	기존사업장					신규사업장						
			매출액 증명		고정비 증명(선택)			매출액 증명		고정비 증명(선택)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과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면세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필수)	급여	임차료	광고 선전비	보험료	영업매출장 (계입일부터 폐쇄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급여	임차료	광고 선전비	보험료

① 고정비용의 경우 해당 서류 첨부 시 체크하고,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기존사업장>
 ① 급여: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2019년)
 ② 임차료: 부동산 및 기계류 임대차계약서(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상이한 경우 2019년 1년치 통장이체내역 첨부)
 ③ 광고선전비: 광고선전계약서(2019년), 광고선전비 이체내역(2019년)
 ④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2019년 유해계약권, 영업장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영업용차량보험에 한함)
 ③ <신규사업장>
 ① 급여: 급여이체내역(계입일부터 조치발달일),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계입일-조치발달일)
 * 근로자 개인정보는 삭제요함
 ② 임차료: 부동산 및 기계류 임대차계약서
 ③ 광고선전비: 광고선전계약서, 광고선전비 이체내역
 ④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영업장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영업용차량보험에 한함)

○ 시군구 담당자 정보 등

소속과	직급	이름	이메일	연락처(사무실)	연락처(핸드폰)	기타 전달사항
소속과	직급	이름	mail@mail.net	02-444-4444	010-1111-1111	

○ 보완요청 내용

○ 증명자료 첨부파일 ① 첨부파일 1개당 5MB, 전체 첨부파일 용량은 5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파일추가 X 삭제 > 다운로드

파일명	파일용량

입시지원
비용계산
목록

○ 사회복지시설

임시저장
삭제
목록

○ 대상기관 정보(사회복지시설)

시도	시군구	사업자등록번호	장기요양기관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기관 담당자		
선택	선택					이름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 대상기관 정보(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	------

○ 지자체 조치명령 및 조치이행 내역 [발 추가] [발 삭제] 총: 1 건

순번	일자	방법	범위		지자체 조치 명령										이행기간	사회복지시설 조치 이행 점검이행 (소독 등) 소요비용 (원)	보건소 조치	
			전체	일부	일시 폐쇄	출입 금지	이동 제한	소독	정보 공개	기타	영업 시간 외	24시간 운영	시작일시	종료일시				전용 기간
1		선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① 관련근거: 법 제70조제1항제3호(업무정지), 제4호(일시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소독)
단,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염제한 또는 감염금지: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대상이 아님.
② 지자체 조치명령 근거자료는 반드시 첨부파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미이용자로 인한 손실내역 [발 추가] [발 삭제] 총: 1 건

순번	미이용자 성명	주민번호6자리 (생년월일)	미이용기간		상급침실 이용		
			시작일자	종료일자	1인실	2인실	이용안함
1			<input type="checkbox"/>				

① 상급침실 이용 근거자료는 반드시 첨부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담당자 정보 등

소속과	직급	이름	이메일	연락처(사무실)	연락처(핸드폰)	기타 전달사항
소속과	직급	이름	mail@mail.net	02-444-4444	010-1111-1111	

○ 보완요청 내용

○ 증빙자료 첨부파일 ① 첨부파일 1개당 5MB, 전체 첨부파일 용량은 5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파일 추가] [x 삭제] [↓ 다운로드]

파일명	파일용량

임시저장
삭제
목록

○ 의료부대사업

☞ 포항나리연안고 > 포항나리연안 손실보상 신고 >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지자체)
▶ **접속요청**

입력자명 의용대원 목록

○ 대상기관 정보

시도	시군구	요양기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명	대표자명	이름	기관 담당자
선택	선택	<input type="text"/>	전화번호(핸드폰) <input type="text"/> 이해일 <input type="text"/>				

※ 요양기관번호 입력 후 조회(엔터입력 또는 버튼클릭)하면 시도, 시군구, 요양기관명, 대표자명만 자동입력 됩니다.

○ 대상기관 정보(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지자체 조치명령 및 조치이행 내역

발주기 발시대 총: 1건

순번	일자	방법	지자체 조치 명령										이행기간	의료기관 조치이행 작업이행 (소독 등) 소독이행 (용)	보건소 조치		
			전체	일부	일시 폐쇄	출입 금지	이동 제한	업무 중지	소독	정보 공개	기타	영업 시간 외				24시간 운영	시작일시
1		선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관공서: 법 제70조제1항제2호(업무중지), 제4호(일시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소독), 제5호(정보공개)
 단,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염예방 또는 감염증자는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대상이 아님.
 ※ 지자체 조치명령 근거자료는 반드시 첨부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장 정보 작성

발주기 발시대 총: 1건

순번	조치명령일자	구분	유형	상호명	대표자	손실보상 담당자			기타 전달사항
1	--	선택	선택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이름	전화번호(핸드폰)	이해일	

○ 시군구 담당자 정보 등

소속과	직급	이름	이해일	연락처(사무실)	연락처(핸드폰)	기타 전달사항
<input type="text"/>						

○ 보건요청 내용

○ 증빙자료 첨부파일

① 첨부파일 1개당 5MB, 전체 첨부파일 용량은 5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파일추가
× 삭제
▶ 다운로드

파일명	파일용량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입력자명 의용대원 목록

○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이의신청

손실보상(지자체) 이의신청

이의신청 사유(최대 200자, 5줄 이내 요약 작성) 원청구 확인

①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 첨부파일에 '이의신청서 서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기타 전달사항(최대 200자)

보완요청 내용

증빙자료 첨부파일
+ 파일추가
× 삭제
↓ 다운로드

	파일명	파일용량
<input type="checkbox"/>		

① 첨부파일 1개당 5MB, 전체 첨부파일 용량은 5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① 용량이 초과되는 파일은 용량을 줄인 후 업로드를 해야합니다.

이의신청 제출

○ (의료부대사업) 이의신청

손실보상(지자체) 이의신청
✕

○ 신청 병원 정보 원청구 확인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입금계좌정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 이의신청 대상 영업장 정보 행추가 행삭제 총: 0 건

순번	구분	유형	상호명	대표자	손실보상 담당자			이의신청 사유(요약)
					이름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기타 전달사항(최대 200자)

○ 보완요청 내용

○ 이의신청 관련 문서 첨부 ①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 첨부파일에 '이의신청서 서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파일추가 × 삭제 ↓ 다운로드

	파일명	파일용량
<input type="checkbox"/>		

소속 의료부대사업 중 추가 이의신청 영업장은 위임을 확인함 최종제출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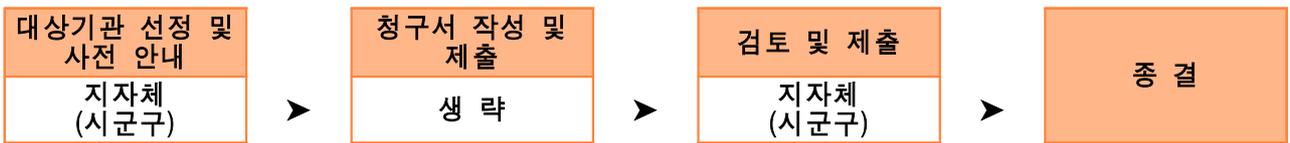
붙임15

영업시간 외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한 경우 손실보상 업무 처리

- 폐쇄 등 조치 없이 소독 조치만 있고*, 이를 영업시간 외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한 경우 손실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 손실보상 청구 및 접수는 불필요
 - * 요양기관의 경우 소독 조치 외 정보공개 또는 의사/약사의 자가격리 조치도 없는 기관
- 다만, 대상기관에게 별도 안내는 필요(서면, 문자, 이메일 등)(붙임3 안내문 참조)

- 조사표 작성 시 이행기간에는 ‘영업시간 외*’, 조치이행에는 ‘보건소 조치**’ 항목에 체크하고, 향후 민원, 행정소송 등 이의제기에 대비하여 안내 근거***는 시스템에 등록(이후 종결)
 - * 기회비용(영업상 손실) 미산정 ** 직접비용(소독 비용) 미산정
 - *** 서면, 문자, 이메일 등 발송 내역

< 업무 처리 절차 >



<조사표 작성 방법>

The screenshot shows a detailed web form with the following sections:

- 대상기관 정보(일반영업장):** Fields for address, county, business number, name, representative name, age, phone number, and email.
- 대상기관 정보(입금계좌):** Fields for bank name and account number.
- 지자체 조치명령 및 조치이행 내역:** A table with columns for order number, name, date, content, and completion status. A '지자체 조치 명령' dropdown is visible.
- 영업손실 증빙자료:** A table for recording business loss evidence, including categories like '기타사업장', '판매처', and '공급처' with sub-fields for '고장비용(선택)', '발주서류', and '고장비율(선택)'. It also includes checkboxes for '판매처', '판매처', '판매처', and '판매처'.
- 시군구 담당자 정보 등:** Fields for county, name, age, email, phone number, and fax number.
- 증빙자료 첨부파일:** A section for attaching evidence files, with a file name '안내문 통보 내역(또는 이메일 발송 내역 또는 문자 발송 내역)(서울-중구-ㅇㅇ식당).pdf'.

- (목적) 장기간 폐쇄·업무정지 조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게 손실보상금 일부(70%)를 우선 지급함으로써 병원경영의 어려움 해소

* 손실보상금 산정 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금액을 적용하므로 최소 3~4개월 소요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5(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제70조의5(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9.]

- (대상기관)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분할지급을 신청한 기관

※ (제외대상) 손실보상금 규모가 작아 분할지급의 실익이 없는 △7일 이하 폐쇄·업무정지 기관, △이미 개산급으로 손실보상금 긴급지원을 받은 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은 신청 제외/ 분할지급 신청기관이라도 △1개월 이내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액 산출될 예정이거나, △산정한 분할지급액이 미미(100만원 미만)한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신청방법: 청구인) 손실보상 청구 시 '분할지급신청서' 추가 제출

- (처리방법: 지자체) 조사표의 '분할지급 신청' 항목에 체크

- (지급방법: 복지부) 손실보상 청구 3개월 이내 손실보상금의 70% 우선 지급(1차), 이후 정산 지급(2차)

* (1차, 우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 기준으로 산정한 손실보상금의 70% 지급 →
 (2차, 정산지급)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금액 기준으로 손실보상금 최종 산정, 나머지 금액 지급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 및 손실보상 청구·지급 흐름도>

	n월	n+1월	n+2월	n+3월	n+4월	n+5월	n+6월
	(조치월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금액 확정		
	↓				↓		
일괄 지급	(청구 완료 후)				⇒ 손실보상금 지급		
분할 지급	손실보상 청구	⇒ 1차 손실보상금 지급(70%)			⇒ 2차 손실보상금 지급(정산)		

- (이의신청 : 청구인) 2차 손실보상금 지급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1회)

목 차

I.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1	국가에서 보상하는 손실범위는?
2	집합금지 및 집한제한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영업장도 손실보상대상인지?
3	집합금지 기간동안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고 영업을 지속하던 중 정부 등 조치명령 이행에 따른 휴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인지?
4	정부 지침과 별도로 지자체 자체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여부?
5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기관이 폐쇄되었을 경우 공공기관 내 매점, 커피숍 등에 대한 손실보상가능여부?
6	구두지시에 의한 폐쇄·소독 등의 조치도 보상가능한지?
7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개설자가 정부·지자체의 조치없이 자발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휴업 등을 한 경우 보상가능여부?
8	약국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이 폐쇄 또는 휴업조치 됨에 따라 환자 감소 등으로 발생한 약국의 간접손실에 대해 보상가능 여부?
9	건물 전체가 폐쇄 조치된 경우, 해당 건물에 입주한 요양기관 및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 여부?
10	국민안심병원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11	생활치료센터 지정에 따라 휴업한 생활치료센터 내 입점 영업장(매점 등)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12	임시검사(생활)시설(입점영업장 포함)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II. 손실보상 청구 절차 등

1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결정?
2	손실보상 청구방법은?
3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4	코로나19 관련 손실은 '20년도에 한하여 보상?
5	지자체가 손실보상대상으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
6	손실보상대상기관의 처리상태를 확인하려면?
7	손실보상금과 중복되는 사업의 범위는?
8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기관에서 발생한 소독비용 등 에 대한 보상기준 산정방식은?
9	폐쇄·출입금지·소독 조치명령서 상의 명령대상 범위를 초과하여 조치한 경우
10	소독명령이행이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9시)*' 외 내려진 경우 *주요업종 평균 영업시간 고려하여 일괄 적용(예외: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편의점)
11	'소독 이행기간' 인정기준
12	영업장이 소독대행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독명령을 이행한 경우

Ⅲ. 의료기관	
1	의료기관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손실보상청구방법은?
2	코로나19 방역협력기관(감염병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의 경우 확진자 발생·경유로 폐쇄·업무정지·소독 시 손실보상 청구방법은?
3	직접비용 중 소독비용 외 기타 비용이 있을 경우 손실보상여부?
4	의료기관이 전체 폐쇄되었을 경우 의료부대사업 청구방법은?
5	의료기관이 전체 폐쇄되었을 때, 의료부대사업 계약자가 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일 경우 손실보상 가능 여부?
6	요양시설의 촉탁의, 조산원의 지도의사 등 해당 시설이 확진자 발생·경유되어 의사가 자가격리 등으로 원래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못했을 경우 손실보상방법은?
Ⅳ. 약국·일반영업장	
1	일반영업장의 보상대상범위(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2	어린이집, 유치원 손실보상 가능한지?
3	실외 영업장(주유소 등)에 대한 소독조치 명령 시 보상여부
4	대중교통수단(항공기, 버스, 택시 등) 소독조치한 경우
5	생산공장의 일부가 영업중단 조치되었으나, 공장의 특성상 일부폐쇄는 공장 전체 폐쇄로 이어지는 구조로 명령범위를 초과하여 자발적으로 전체 공장 영업중단시 보상범위는?
6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조치명령* 시 내부 입점업체에 대한 보상 청구 절차 및 방법은? * 건물전체가 폐쇄된 경우
7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가능한 업체인 경우에, - 조제기(약국의 자동포장기) 등 기기 임차료가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8	영업장 표준재무제표가 본사와 별도 분리되지 않을 경우 필요 서류는?
9	약국 일별 매출장(장소공개, 회복기간 손실입증용) 제출 서류는?
10	약국의 폐쇄·업무정지 기간 중 법정 공휴일은 보상기간에서 제외되는지?
11	손실보상기관에 해당되나, 올해 개업하여 증빙서류 중 전년도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12	'24시간 운영' 영업장은 별도 입증이 필요한지?
13	영업시간 외 소독조치 및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 보상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소독조치에 따른 자체소독이 시행된 경우 직접비용(소독비) 보상 가능한지?
14	간이지급절차로 손실보상하는 경우 영업시간 내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인지 확인 해야 하는지?
Ⅴ. 자가격리·정보공개 의료기관·약국	
1	일반영업자의 대표가 정부·지자체의 자가격리조치되어 격리조치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 가능여부?

2	2인 이상 운영 요양기관의 전체 의사 또는 약사가 진료 중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조치됨에 따라 격리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휴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가능 여부?
3	2인이상 운영 요양기관의 일부 의사 또는 약사가 진료 중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조치됨에 따라 격리기간 동안 진료(영업)가 축소된 경우 손실보상 보상가능여부?
4	확진자가 발생·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한 요양기관의 일반영업장의 손실보상 가능여부?
5	복지부·지자체가 아닌 미디어에 의해 확진된 발생·경유 정보가 공개된 요양기관의 경우도 손실보상대상인지?
6	확진자 발생·경유로 정보공개 시 정확한 요양기관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손실보상 가능여부?
7	확진자 발생·경유로 정보공개·자가격리 되었으나, 별도의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가 없을 경우 손실보상 가능여부?
8	확진자 발생·경유로 의사·약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경우 손실보상 대상 기간은?
VI. 사회복지시설	
1	사회복지시설의 손실보상 법적근거는?
2	예방적 격리(코호트격리)의 경우 손실보상대상여부?
3	사회복지시설 미이용자 급여비 손실 산출 방법?
4	시설의 폐쇄 등 조치명령 없이 이용자만 격리되었을 경우 손실보상가능여부?
VII.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협력기관	
1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2	개산급을 지급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은?
3	개산급 지급액이 최종 손실보상액인지?
4	감염병전담병원의 진료 외 부대시설 손실보상 대상 및 기간은?
5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현황은?
6	직접비용 보상 항목 및 대상기관 유형은?
7	시설개조 및 장비 구입비 등을 사업예산으로 既지원받은 경우 보상가능한지?

I.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Q1. 국가에서 보상하는 손실범위는?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제1항에 따른 손실만 보상
- 코로나19 ①환자 치료 의료기관 및 ②방역 협력 의료기관
 - ①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기타 치료의료기관
 - ② △생활치료센터 협력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 정부·지자체의 강제적 조치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기관(요양기관,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대표적 사례】

- ▶ 정부·지자체의 지시/명령 등 강제적 조치가 아닌 자발적으로 소독, 휴업한 경우
- ▶ 코로나19에 따라 자연적 환자(손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영업) 감소분
-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별도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생활)시설, 접촉자 격리시설
- ▶ 국민안심병원

Q2.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영업장은 손실보상 대상인지?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예방조치)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은 손실보상 대상 아님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
 - * 감염병의 예방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0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에 한하여 보상 가능(시행령 별표2의2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참고)

Q3. 집합금지 기간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미준수하고 영업을 지속하던 중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정부·지자체의 폐쇄·소독조치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대상인지?

- 집합금지 기간 중에는 원래 영업을 불가능한 것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던 중 확진자 발생 등으로 폐쇄·소독조치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손실보상 대상 아님

Q4. 정부 지침과 별도로 지자체 자체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 여부?

-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 및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지자체 조치는 국고로 손실보상 지원하되, 정부 지침과 별도의 지자체 조치는 지자체 부담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도지사도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가능

* 제70조의2(손실보상심의위원회)①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생략..

Q5.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기관이 폐쇄되었을 경우, 공공기관 내 매점, 커피숍 등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 여부는?

- 감염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제한 등 예방적으로 조치한 경우로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대상이 아님

Q6. 구두지시에 의한 폐쇄, 소독 등의 조치도 보상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는 지자체 서면(공문, 조치명령서) 지시가 필요하나, 당시 긴급한 상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두·전화 조치한 경우 해당 명령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지자체 공문 필요)

Q7.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개설자가 정부·지자체의 조치 없이 자발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휴업 등을 한 경우 보상 가능 여부?

-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경유하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소독, 휴업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님
- 단, 코로나19 환자가 발생·경유한 요양기관에 한하여 정부·지자체 조치명령 이전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응급실 폐쇄 등 자발적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소관 지자체가 해당 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의 조치명령 이행기간으로 편입 가능

Q8. 약국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이 폐쇄 또는 휴업조치 됨에 따라 환자 감소 등으로 발생한 약국의 간접손실에 대해 보상 가능 여부?

- 의료기관이 폐쇄 또는 휴업 조치 됨에 따른 인근 약국의 간접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님

Q9. 건물 전체를 폐쇄 조치한 경우, 해당 건물에 입주한 요양기관 및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 여부?

- 정부·지자체의 조치로 건물 전체가 폐쇄된 경우, 건물내 입주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손실보상 대상

Q10. “국민안심병원*”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 내 감염 발생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

- “국민안심병원”은 자발적 신청에 따라 지정되고 지정에 따른 별도 수가를 반영하는 등, ‘강제적 조치’ 및 ‘이에 따른 손실’이라는 손실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치료의료기관 보상 대상이 아님
- 폐쇄·업무정지·소독한 경우 일반의료기관과 동일하게 보상

Q11. 생활치료센터 지정에 따라 휴업한 생활치료센터 내 입점 영업장 (매점 등)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 생활치료센터(입점 영업장 포함)는 별도 예산을 통해 지원·운영 중으로 손실보상 대상 아님

Q12. 임시검사(생활)시설*(입점 영업장 포함)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 대기 및 국내 거주지가 없는 해외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의 격리(14일)를 위한 시설

- 임시검사(생활)시설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시설로 법 제70조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며,
 - 시설임차, 격리 대상자로부터 이용비용 징수 등을 통해 운영

II. 손실보상 청구 절차 등

Q1.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결정?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감염병예방법 제70조 근거 법률·손해사정·분쟁조정·건강보험 전문가 및 의료계로 구성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손실보상방법에 따라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손해사정사회의 검토 후 손실보상금 산정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

Q2. 손실보상 청구방법은?

손실보상청구서 및 증빙서류 등을 대상별 청구(접수)기관에 제출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청구(접수)기관>

손실보상 대상기관	청구(접수)기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심평원)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한 기관 등	지자체 (시군구)

Q3. 손실보상 지급시기는?

- 손실보상청구 후(지자체→복지부(심평원) 제출기준) 3개월 이내 지급 예정
- 순차적으로 손해사정 완료 후 매월 1~2회 지급 계획

Q4. 코로나19 관련 손실은 '20년도에 한하여 보상?

-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은 연도와 관계없이 정부·지자체의 폐쇄·소독 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됨
 - 다만, 향후 감염병 유행 상황변화 등에 따라 손실보상대상 및 산정기준 등이 변동가능

Q5. 지자체에서 손실보상 대상으로 안내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

- 정부·지자체의 폐쇄·소독 조치 등 강제적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으로, 손실보상 대상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1차 안내가 이뤄질 예정
- 따라서, 지자체로부터 폐쇄·소독 등 명령을 받았으나 손실보상 청구를 안내받지 못한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Q6. 손실보상기관의 손실보상 처리절차 진행단계를 확인하려면?

- 지자체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 가능

Q7. 손실보상금과 중복되는 사업의 범위는?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중복사업이나,
- 소상공인 경영을 지원,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지원 사업은 중복이 아님

Q8.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기관에서 발생한 소독비용 등에 대한 보상기준 산정방식은?

- 지자체는 우선 손실보상 대상여부 및 손실규모 등을 확인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소독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기관 자체비용으로 소독 조치한 경우 보상 청구 가능

Q9. 폐쇄·출입금지·소독 조치명령서 상의 명령대상 범위를 초과하여 조치한 경우?

- 명령 범위를 초과한 자발적 조치 부분은 보상대상이 아님

Q10. 소독명령이행이 '영업시간(오전 9시 ~ 오후9시)*' 외 내려진 경우

*주요업종 평균 영업시간 고려하여 일괄 적용(예외: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 영업소가 초과 영업사실을 입증(예: 매출전표 확인) 시 보상 가능

Q11. '소독 이행기간' 인정기준

소독시간과 소독후 일정시간 환기를 권고한 경우 환기시간 포함 가능

*구두명령 시에는 사후확인공문(조치명령일자, 내용, 이행기간 명시될 것)

※ 지자체 필수 확인사항

① 지자체 명령서*와 손실보상 조사표(시스템) 간 명령이행기간은 필히 일치시킬 것

(예외적으로 이행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불일치해도 인정)

② 명령서, 조사표에 '일자'만 기재된 경우, 소독이행시간 보완 필요

③ 소독기준(「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을 초과하여 소독기간이 장기 소요된 경우, 사실관계 추가확인 필요

*구두명령 시에는 사후확인공문(조치명령일자, 내용, 이행기간 명시될 것)

Q12. 영업장이 소독대행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독명령을 이행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상 소독대행업자가 소독을 실시하게 하고 보건소는 소독이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점검토록 하고 있으므로, 소독 부적절 이행

Ⅲ. 의료기관

Q1. 의료기관 대표자가 2인이상일 경우 손실보상청구방법은?

- 공동대표 중 대표공동사업자를 선임하고, 대표공동사업자가 손실보상청구업무를 위임받아 서류 작성 및 제출
- 공동사업자의 위임사실 확인을 위해 '손실보상 청구위임장' 제출

Q2. 코로나19 방역협력기관(감염병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등)의 경우 확진자 발생·경유로 폐쇄·업무정지·소독 시 손실보상 청구방법은?

- 폐쇄·업무정지·소독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손실보상업무 수행
 - * (접수) 지자체, (심사·지급) 보건복지부
- 단,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금(개산금) 지급 시 중복 지원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지급 예정

Q3. 직접비용 중 소독비용 외 기타 비용이 있을 경우 손실보상여부?

- 국가가 보상하는 직접비용은 소독비용으로 한정하며, 지자체 판단으로 소독조치 이외 다른 조치명령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자체가 보상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따라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각 시·도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가능

Q4. 의료기관이 전체 폐쇄되었을 경우 의료부대사업 청구방법은?

- 전체 폐쇄 또는 업무정지 의료기관이 의료부대시설(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을 운영할 경우 손실보상대상으로,
 - 대상의료기관은 각 영업장의 서류를 취합하여 지자체에 접수
 - * (전산망 작성경로) 코로나관련신고→코로나19관련손실보상신고→손실보상조사표 작성(지자체)→의료부대사업
 - 최종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대상기관인 의료기관에 지급하며, 의료기관은 영업장별 심사금액 및 계약관계를 고려하여 영업장(수탁인·임차인)에게 손실보상금 배분

Q5. 의료기관이 전체 폐쇄되었을 때, 의료부대사업 계약자가 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일 경우 손실보상 가능 여부?

- 학교법인과 의료기관의 관계를 증빙서류로 입증될 경우 손실보상 가능 단, 의료기관과 의료부대사업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 기존 제출자료 외에 (법인)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추가 제출
 - 만약, 의료부대사업 중 사립학교법상 병원에 부속된 시설이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분리하여 학교법인 직영으로 운영될 경우 해당 의료부대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및 학교법인 정관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Q6. 의사가 요양시설의 촉탁의, 조산원의 지도의사 등으로 진료 활동 중 확진자와 접촉, 자가격리(또는 확진)되어 원소속 의료기관이 휴업한 경우 손실보상 가능 여부 및 가능시 청구 방법

□ ③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지침 14페이지)에 준하여 보상가능

* (법 제70조제1항제5호) 감염병환자가 발생·경유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의료기관 폐쇄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손실에 해당

○ 촉탁의·지도의사로 활동중인 시설 소재 지자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원소속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접수

VI. 약국·일반영업장

Q1. 일반영업장의 보상대상 범위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 일반적으로 음식점, 숙박업소, 상점 등 매출액증빙서류를 가진업체이며,
-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기관)은 원칙상 대상이 아님.
 - 다만, 고유목적사업 외 별도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에서 손실을 입증 시에는 보상 대상

Q2. 어린이집, 유치원 손실보상 가능한지?

- 어린이집, 유치원은 정부 등으로부터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 ※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보육료·유아학비 전액(또는 일부)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휴원 기간 중에도 정상 지원하고 있어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부담금을 납부받는 점을 고려할 때, 폐쇄·소독조치로 인해 휴업하고 휴업 일수만큼 환불한 금액이 있어 이를 입증 시에는 보상 가능

Q3. 실외 영업장(주유소 등)에 대한 소독조치 명령 시 보상여부

- 지자체 조치명령서에 따라 소독이 시행된 경우 보상 가능

Q4. 대중교통수단(항공기, 버스, 택시 등) 소독조치한 경우

- 정부·지자체의 소독명령에 따라 소독조치가 실시된 경우 소독비용 등 보상 가능

Q5. 생산공장의 일부가 영업중단 조치되었으나, 공장의 특성상 일부 폐쇄는 공장 전체 폐쇄로 이어지는 구조로 명령범위를 초과하여 자발적으로 전체 공장 영업중단 시 보상 범위는?

- 조치명령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실 보상가능

Q6.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조치명령* 시 내부 입점업체에 대한 보상 청구 절차 및 방법은?

*** 건물전체가 폐쇄된 경우**

- 손실보상 평가를 위하여 각 입점업체별로 손실보상 청구서류 일체* 필요
* 손실보상청구서, 정보제공동의서, 계좌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영업손실증빙자료 등
- 단, 마트, 백화점 대표가 각 입점업체의 청구서류를 취합, 제출 가능

Q7.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가능한 업체인 경우에,

- 조제기(약국의 자동포장기) 등 기기 임차료가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기계류(예, 조제기) 임차료가 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체인 경우 해당 임차기기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제출 가능

*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불가능한 영업장의 경우, 고정비(임차료)에 기 반영 조치

Q8. 영업장 표준재무제표가 본사와 별도 분리되지 않을 경우 필요 서류는?

- 월별매출 확인을 위해 ①기존 사업장은 2019년 월별매출장, 본사와 구분계리된 내부 매출증빙자료, ②당해년도 신규 사업장은 당해연도 월별매출장(개업월~폐쇄·업무정지 종료월) 제출
 - 본사-지점 간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본사와 구분계리된 재무제표와 매출증빙자료 또는 (본사가 작성한) 해당지점의 재무제표 제출
 - 고정비 지출 중 특이소요가 있을 경우 아래의 증빙서류(위의 표와 동일) 첨부
- 고정비 지출의 특이소요가 있을 경우 아래의 증빙서류(표 참조)를 첨부하되, 기타 고정비(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및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유사업종 표준 고정비 적용 예정

Q9. 약국 일별 매출장(장소공개, 회복기간 손실입증용) 제출 서류는?

- 반드시 약국의 모든 내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을 제출
 - ① 조제약(급여약제비와 비급여약제비가 모두 포함될 것) + 일반의약품 판매내역, ②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자료 제출할 것

Q10. 약국의 폐쇄·업무정지 기간 중 법정 공휴일은 보상기간에서 제외되는지?

- 약국의 일평균 손실액 산정시에 법정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 총 66일) 제외한 연간 평균 영업일수(총 299일)로 손실액 산정하므로, 보상 제외

Q11. 손실보상기관에 해당되나, 올해 개업하여 증빙서류 중 전년도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 전년도 손익계산서 대신 개업일부터 지자체 조치로 인한 폐쇄일까지의 월별 매출장 제출(개업월부터~ 폐쇄·업무정지 종료월까지)

Q12. '24시간 운영' 영업장은 별도 입증이 필요한지?

- 24시간 운영하는 영업장은 영업시간 외 영업사실 입증(매출전표 등) 불요
- (24시간 영업장) 편의점, 숙박업소, PC방, 찜질방, 사우나, (영업장 내·외부, 간판 등에) 24시간 영업소로 표시된 곳, 인터넷 포털에 24시간 영업시간이 표시된 곳
- ※ 지자체는 조사표 작성 시, 해당 영업장이 '24시간 영업장'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제출할 것(기타전달사항에 '24시간 운영 업장임을 확인함' 등으로 기재)
- 24시간 영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장이 일반영업시간(오전9시~오후9시) 이외 시간대에 영업한 경우에는, 별도 입증(매출전표 등) 시 보상
- 기타전달사항에 '실제 운영시간 00시~00시' 등으로 기재

Q13. '영업시간 외 소독조치 및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 보상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소독조치에 따른 자체소독이 시행된 경우 직접비용(소독비) 보상 가능한지?

- 소독비 보상 가능

Q14. 간이지급절차로 손실보상하는 경우 영업시간 내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인지 확인해야 하는지?

영업시간 외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한다 볼 수 없으므로, 영업시간 내 조치에 한해서만 간이지급 신청 가능

※ 일반영업시간(오전9시~오후9시)

V. 자가격리 정보공개 의료기관·약국

Q1. 일반영업장의 대표가 정부·지자체의 자가격리 조치로 격리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 가능 여부?

- 요양기관 외 일반영업장은 자가격리에 따라 휴업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상 손실보상대상이 아님
 - * 손실보상 대상을 정한 법 제70조제1항 각호 중 제1호~제3호는 감염병환자등의 치료·진료·격리 관련, 제4호 보상 가능한 조치에 자가격리는 제외, 제5호는 요양기관에 한정
 - *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70조의4에 따라 유급 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 중

- 다만, 요양기관은 환자 진료 등 요양기관의 업무 수행 중 확진자와 접촉하여 전체 의사 또는 약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불가피한 휴업에 따른 손실은 보상
 - 다만, 환자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의사/약사가 격리조치된 경우 보상대상 제외
 - * (법 제70조제1항제5호) 감염병환자가 발생·경유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의료기관 폐쇄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손실에 해당

Q2. 2인 이상 운영 요양기관이 전체 의사 또는 약사가 진료 중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조치됨에 따라 격리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 가능 여부?

- 2인 이상 운영하는 요양기관의 전체 의사 또는 약사가 요양기관 업무 수행 중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된 경우
 - 사실상 폐쇄 또는 업무정지 조치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자가 격리 기간 동안 휴업 손실 보상

Q3. 2인 이상 운영 요양기관의 일부 의사 또는 약사가 진료 중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조치됨에 따라 격리기간 동안 진료(영업)가 축소된 경우 손실보상 가능 여부?

- 의사·약사 격리비율이 50% 이상이면서 격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기간 동안의 진료(영업)비 감소율이 70% 이상인 경우 보상 가능

Q4. 확진자가 발생·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한 요양기관 외 일반영업장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 법 제70조제1항제5호는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에 한해 보상하도록 규정

* 일반영업장에서 폐쇄, 소독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유형으로 보상

Q5. 복지부/지자체가 아닌 미디어에 의해 확진자 발생·경유 정보가 공개된 요양기관의 경우도 손실보상 대상인지?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 법 제70조제1항제5호는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에 한해 보상하도록 규정

Q6. 확진자 발생·경유로 확진자 동선 정보공개 시 정확한 요양기관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ex. 00의원으로 표기) 정보공개에 대한 손실 보상가능여부는?

- 손실보상대상기관이 정확한 요양기관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직접적인 손실 발생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손실보상대상 아님

Q7. 확진자 발생·경유로 정보공개·자가격리 되었으나, 별도의 폐쇄·업무 정지·소독조치가 없었을 경우 손실보상가능여부?

- 지자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 사실 확인 공문 및 정보공개·자가격리 증빙서류 첨부 시 손실보상대상가능

Q8. 확진자 발생·경유로 의사·약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경우 손실보상 대상기간은?

- 확진자 발생·경유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동안 보상

VI. 사회복지시설

Q1. 사회복지시설의 손실보상 법적근거는?

-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 근거로 보상
 - 동법 제47조제1호 및 제5호 근거로 조치한 경우에 한함

Q2. 예방적 격리(예방적 코호트격리)의 경우 손실보상 대상인지?

-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목적으로 외부의 출입을 차단하고 종사자의 근무형태를 조정하여 출입 횟수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예방적 격리는 손실보상 대상 아님

Q3. 사회복지시설의 미이용자 급여비 손실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 서비스 미이용 기간의 미이용자의 1일당 급여비 합계에서 시설유형별 변동비용비율 반영 후 미이용자의 급여비 지급액을 차감하여 산출

구분		내용
시설 급여 기관	서비스 미이용자	· 기관의 조치기간 내 기관외 장소로 입원·격리된 자
	서비스 미이용기간	· 기관의 조치기간 내 미이용자의 입원·격리조치 시작일~기관의 조치 종료일
재가 급여 기관	서비스 미이용자	· 기관의 조치기간 내 장기요양 급여계약이 통보된 자
	서비스 미이용기간	· 기관의 조치기간(조치 시작일~종료일)

Q4. 기관(시설)의 폐쇄 등 조치명령 없이 이용자만 격리되었을 경우 손실보상이 되는지?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여 정부·지자체로부터 감염병 예방법 47조제1호·제5호의 조치로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의 급여비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기관(시설)에 대한 조치 없이 이용자만 격리되었을 경우 손실보상 대상 아님

Ⅶ.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협력기관

Q1. 코로나19환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 손실보상은 상황이 종료된 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 지속 등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하고자,
 -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하여 향후 정산하는 개산급(概算給) 형태로 조기 지급

Q2. 개산급을 지급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① 및 방역협력기관^②은?

- ①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 ②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생활치료센터 협력기관

Q3. 개산급 지급액이 최종 손실보상액인지?

- 개산급은 손실 또는 그 손실의 일부를 잠정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최종 손실보상액이 아님
- 손실이 확정된 이후 손실보상액 산정 후 최종 정산 예정

Q4.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의 진료 외 부대시설 손실보상 대상 및 기간은?

- 진료외 부대시설 손실보상대상은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커피숍 등 입점 영업장을 대상으로 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손실에 대해 보상 예정(일할계산, 회복기간 제외)
 - 단, 건강검진 수익은 유보된 수요로 간주되어 보상대상에서 제외

Q5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현황은?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폐쇄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총356개 기관에 약8,958억원 지급완료(12월말 기준),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 예정

구분	보상기관	보상대상	지급액(억원)
1차(4.9)	코로나19 환자치료기관 폐쇄의료기관	빈병상손실 폐쇄의료기관손실	1,020
2차(5.29)	감염병전담병원	빈병상손실 환자치료병상손실	1,308
3차(6.29)	코로나19 환자치료기관	빈병상손실 환자치료병상손실 일반환자 감소손실	622
4차(7.31)	코로나19 환자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빈병상손실 환자치료병상손실 일반환자 감소손실	1,073
5차(8.31)	코로나19 환자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생활치료센터협력기관	빈병상손실 환자치료병상손실 일반환자 감소손실	996
6차(9.25)	코로나19 환자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생활치료센터협력기관	빈병상손실 환자치료병상손실 일반환자 감소손실 회복기간동안의 손실 부대사업손실	826
7차(10.29)	코로나19 환자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생활치료센터협력기관	빈병상손실 환자치료병상손실 일반환자 감소손실 회복기간동안의 손실 부대사업손실	810
8차(11.27.)	코로나19 환자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생활치료센터협력기관	빈병상손실 환자치료병상손실 일반환자 감소손실 회복기간동안의 손실 부대사업손실	1,034
9차(12.24.)	코로나19 환자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생활치료센터협력기관	빈병상손실 환자치료병상손실 일반환자 감소손실 회복기간동안의 손실 부대사업손실, 직접비용	1,269

Q6. 직접비용 보상항목 및 대상기관 유형은?

- (소독명령 대상기관(유형②,③,⑥⑦))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지자체의 소독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서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한 경우 보상대상 아님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유형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 시설철거비용, 폐기물처리비용, 환자전원비용을 직접비용으로 보상

* 시설·장비비, 소독비 등은 별도 사업예산으로 지원되거나 건강보험 수가로 보전 되는 항목으로 직접비용 보상대상 아님

※ 기타 유형(생활치료센터(④), 선별진료소(⑤), 접촉자 격리시설(⑧), 동원인력 등(⑨))은 별도 사업예산으로 설치·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므로 직접비용 보상대상 아님

Q7. 시설개조 및 장비 구입비 등을 사업예산으로 旣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 원칙적으로 사업예산으로 旣 지원받은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 사업부서(중수본 환자병상지원팀 등)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하지 못한 경우 보상 가능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	시행령 별표2의2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대상	범위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좌동	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의 치료·진료·격리시설·장비·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좌동	가.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 나. 접촉자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감염병관리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해당	가. 치료·진료·격리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소요비용 나. 치료·진료·격리로 인해 시설·장비·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의료기관	폐쇄 또는 업무 정지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복지부, 시도, 시군구청장의 감염병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제47조제1호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 또는 통행차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설·장비·인력 비용	
		제47조제4호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 또는 태우거나 폐기처분 당시 그 물건의 평가액	
		제47조제5호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복지부, 시도, 시군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조치	오염장소 등 소독조치	제48조제1항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제49조제1항제4호	제49조제1항제4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어 판매·수령이 금지된 음식물, 폐기된 음식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음식물의 평가액
			제49조제1항제6호	물건의 소지·이동이 제한·금지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 또는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물건의 평가액
			제49조제1항제7호	(운송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배치된 의사의 인건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제49조제1항제8호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제49조제1항제9호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에 드는 비용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제49조제1항제10호	어로(漁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동안 해당 어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액
			제49조제1항제12호	동원된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에 대한 인건비
			제49조제1항제12호	동원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제49조제1항제13호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별표 미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중략>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①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 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동법 시행령> 제28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는 별표2의2와 같다.

- ②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연평균수입 및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2의2]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1.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 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의 치료·진료·격리료 시설·장비·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 1의2. 법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 가.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
 - 나. 접촉자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2.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해당 의료기관(감염병관리기관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치료·격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치료·진료·격리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소요비용**

나. 치료·진료·격리로 인해 **시설·장비·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3.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해당 의료기관이 폐쇄 또는 업무 정지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4. 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 또는 통행차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설·장비·인력 비용**

5. 법 제47조제4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 또는 태우거나 폐기처분 당시 그 물건의 평가액

6. 법 제47조제5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7.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8.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어 판매·수령이 금지된 음식물, 폐기된 음식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음식물의 평가액**

9.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물건의 소지·이동이 제한·금지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 또는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물건의 평가액**

10.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배치된 **의사의 인건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11.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12. 법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에 드는 비용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13. 법 제4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어로(漁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동안 해당 어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액**

14. 법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동원된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에 대한 인건비**

14의2. 법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 **동원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 시설 등 시설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15.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비 고

1. 위 표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위 표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보상금명 (소관부처)	근거법령	보상대상	보상절차	재원부담
가축전염병 손실보상금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11조의5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로 손실을 받은 자	(신청) 신청자는 시군구에 피해보상요구서,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접수: 시군구) 시군구는 피해사실 여부 및 영업손실의 범위를 확인한 후 피해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심사·결정: 시도) 시도는 가축전염병피해 보상협의회(시도 소속) 개최하여 심의·결정 (지급: 시군구) 시군구에서 보상금 지급	국비 80% 지방비 20%
가축전염병 생계안정비용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대상통보) 시군구는 지원대상자에게 서명 또는 구두로 통보 (신청) 신청자는 시군구에 지원신청서 제출 (접수: 시군구) 시군구는 지원금액 확인 후 시도에 지원금액 신청 (심사·결정: 시도) 시도는 신청서를 검토 하여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지급: 시군구) 시군구에서 보상금 지급	국비 70% 지방비 30%
곤충 손실보상금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의2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신청) 신청자는 시군구에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접수: 시군구) 시군구는 조치의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청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심사·결정: 농림축산식품부) (지급: 시군구) 시군구에서 보상금 지급	
식물 손실보상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에 위탁)	식물방역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조의2	병해충 발생에 따른 공적방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	(신청) 신청자는 시군구에 손실보상청구서,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접수: 시군구→시도) 시군구는 접수받은 손실보상청구서 등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 작성하여 농촌 진흥청장에게 제출 (심사·결정: 농촌진흥청) (지급: 시군구) 시군구에서 보상금 지급	
기립불능소 보상금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의4	폐기처리한 기립불능 가축 소유자	(신청) 신청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상 신청 (접수·심사·결정·지급: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상금 평가반을 구성하여 보상적합 여부 판정 및 보상 가격 산정하여 지급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국비 100%